

고 양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053 호】

2014년 02월 28일 (금)

선 람	기 관 의 장

회 랑							
-----	--	--	--	--	--	--	--

차 례

조 례

고양시조례 제1576호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1
고양시조례 제1577호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6
고양시조례 제1578호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고양시조례 제1579호	고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20
고양시조례 제1580호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고양시조례 제1581호	고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	33
고양시조례 제1582호	고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35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14-66호	고양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수립(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44
고양시 고시 제2014-68호	고양 GB해제취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69

공 고

고양시 공고 제2014-326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한양대중골프장9홀 등)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102
-------------------	--	-----

발행 : 고 양 시

편집 : 공보담당관

(우) 412-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주교동 600) ☎ (031) 8075-2095

고 양 시 시 보

제 1053호

고양시 공고 제2014-340호	고양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108
고양시 공고 제2014-341호	도시계획시설(대로3-62호선, 종로1-25호선 확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전 공람 공고	109

발행 : 고 양 시

편집 : 공보담당관

(우) 412-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주교동 600) ☎ (031) 8075-2095

고양시의회 제18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4년 2월 28일

고양시조례 제1576호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고양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하나 시설 또

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시설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보호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

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고양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매년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비용부담)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 제안자 : 오 영숙 · 선주만 · 이화우 · 왕성옥 · 임형성 의원

□ 제정이유

- 고양시의 보조금지원 시설이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지역봉사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성
- 시민들이 보조금지원 시설 또는 단체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 (제1조)
-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사업의 적용범위를 규정함 (제3조)
-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을 규정함 (제4조)
-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와 설치장소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0조)

고양시의회 제18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4년 2월 28일

고양시조례 제1577호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양시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2. "보훈복지"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본인 또는 단체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및 유족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단체
4.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및 유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및 단체

제4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주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실시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4. 국가보훈대상자 및 모범 보훈가족 포상 보훈가족 초청 위안 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5. 공훈선양과 공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정·재정적 지원
6.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7. 주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 시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등

제5조(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 증대와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
2. 호국·보훈 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호국·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
5. 그 밖에 시장이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훈복지 지원 등) 시장은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를 허가·위탁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되 소득분위 120 이하인 자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2. 시에서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체육시설·박물관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 등의 감면
3. 시에서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4. 상·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물 이용부담금 등 그 밖의 부담금의 감면
5.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
6. 시에서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7.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가 취득한자동차의 자동차세와 모든 민원 증명 발급 수수료의 감면
8. 시가 주관하는 개인택시 면허 시 우선순위 부여
9. 경로 예우 또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시책 마련 시 고령 또는 중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10. 생존 애국지사 및 유족 사망 시 조문

제7조(보훈 명예수당의 지급) 시장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 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에 근거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한다.

1. 보훈명예수당 : 1인당 월 30,000원
2. 사망위로금 : 1인당 200,000원

제8조(수당 지급대상자)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로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사람(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연령 제한 적용 제외)으로서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로 두고 거주하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수당의 신청) ①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사망위로금 신청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동장은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 내역을 매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명예수당지급 결정 및 지급) ①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건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결정을 하고 본인에게 통보한다.

② 수당은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매월 20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11조(수당의 지급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당 중지는 사유발생 해당 월까지 지급 한다
- ③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즉시 중지한다.

제12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수급권자의 관리) 시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연구 및 지원함에 있어 민간부문이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이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성명		지급대상유형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예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고양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주민등록 등본 1부. 3. 본인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일자			
	지급대상유형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고양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3호서식]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장

지급 일시	지 급 대 상 자				지 급 내 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수당	은행명	지급계좌
					수당		
					사망 위로금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제안자 : 권순영·김영선·이영희·현정원 의원

□ 개정이유

- 현재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고양시 거주, 65세이상)을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예우 및 지원대상자를 법률에 근거한 단체, 본인, 유족으로 세분화 조정.(제3조)
- 보훈 명예수당의 지급 기준(월30,000원/사망위로금 200,000원) 및 수당지급대상자(고양시 거주, 65세 이상) 기준 마련.
(제7조 부터 제8조까지)
- 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방식을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 배우자, 부양 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의 편리성 도모(제9조)
- 명예수당지급기준 및 수당의 중지, 환수조치, 관리안을 마련하여 집행의 투명성 확보(제10조부터 제13조)

고양시의회 제18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4년 2월 28일

고양시조례 제1578호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소를 둔 65세이상(사망위로금은 연령제한 없음)인 유공자로 한다”를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유공자로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월 3만 원을 지급”을 “월 3만 원을 지급하되 80세 이상은 월 5만 원 지급”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자) ----- ----- ----- 주소를 둔 65세 이상(사망위로금은 연령제한 없음) 인 유공자로 한다.----- ----- ----- ----- 제4조(지원사업) ① (생략) 1. ----- ----- 월 3만원 지급	제3조(지원대상자)----- -----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유공자로 한다. ----- ----- ----- 제4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1.----- -----월 3만원을 지급하되 80세 이상은 월 5만원 지급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 권순영 · 이윤승 · 김완규 · 김영선 · 선재길 · 우영택 ·
이영휘 · 이길용 · 김필례 · 이규열 의원

□ 개정이유

-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 지원범위의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함.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월 5만 원을 지급하여 보다 나은 예우를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 지원대상자의 연령제한을 폐지함 (제3조)
- 명예수당을 월 3만 원으로 지급하되 80세 이상은 5만 원으로 지급함. (제4조)

고양시의회 제18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4년 2월 28일

고양시조례 제1579호

고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고양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과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라 설치된 관·과·소 및 직속기관 등을 말한다.
3. “투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한 규정에 따라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시가 정한 규정에 따라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분석평가 대상) ①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분석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
2. 제6조제1항제2호및3호에 따른 계획 수립 전
3.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고양시의회 제출 전

제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시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 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시장은 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른 고양시 여성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2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① 시장은 법 14조에 따라 성평등 정책 및 분석평가 전담부서 소속 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분석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인지 예·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제13조(분석평가 교육) ① 시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원) 시장은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

□ 제안자 : 왕성옥 · 고은정 · 이윤승 · 장제환 · 이길용 · 강영모 · 오영숙 · 이영희 ·
김경희 의원

□ 제정이유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고양시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성인지 예산과 연계함으로써 성평등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여성발전기본법」의 선언적 조항만 가지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추진을 이끌어내기에 어려움이 있는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인 정책과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무원의 교육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원활한 추진 정책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고양시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정책의 성평등 목적을 달성하도록 정함.(제1조)
- 법 제3조에 따른 시장의 책무.(제3조)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에 따른 평가대상 등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의회 제출.(제10조)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책임관 지정 등 시장은 성평등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고양시 성평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성평등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함.(제32조)

고양시의회 제18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4년 2월 28일

고양시조례 제1580호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27조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보육전문요원을”을 “보육전문요원과 전문인력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양사 등의”를 “영양사, 특수교사, 행정원, 카페관리자 등의”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조력”을 컨설팅”으로 하며 제10호를 제13호로 하고 제10호부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부모에 대한 육아교육

11. 장난감 대여 및 체험·놀이 공간 제공

12.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보육정보센터 직원 인건비 등 지급 기준에 따른다.”를 “일반직 공무원 8급의 보수 등 지급기준에 따르며, 센터장은 예산·사업규모·종사자 수 등에 따라 전문(전임)계약직 공무원 ‘나급’ 또는 ‘다급’ 기준을 적용한다. 그 외의 사항은 고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재무회계 기준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보육정원 30인 이하 어린이집은 연 2회, 31인 이상 어린이집은 연 4회 분기별로 정례회를 개최하며, 필요할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기능) (생략) 1. ~ 2. (생략) 3. <u>보육정보센터</u>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 7. (생략)	제5조(위원회의 기능)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u>육아종합지원센터</u>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 7. (현행과 같음)
제3장 <u>보육정보센터</u>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u>보육정보센터</u>의 설치 및 운영) ① ----- <u>보육정보센터</u> ----- ② ----- <u>보육정보센터</u>-----, <u>보육정보센터</u>----- ③ ----- <u>보육정보센터</u>----- ④ <u>보육정보센터</u>----- ⑤ ~ ⑥ (생략)	제3장 <u>육아종합지원센터</u>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u>육아종합지원센터</u>의 설치 및 운영) ① ----- <u>육아종합지원센터</u> ----- ② ----- <u>육아종합지원센터</u>-----, <u>육아종합지원센터</u>----- ③ ----- <u>육아종합지원센터</u>----- ④ <u>육아종합지원센터</u>-----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u>보육정보센터</u> 운영업무 위탁의 취소) ----- <u>보육정보센터</u> ----- 1. ~ 4. (생략)	제11조(<u>육아종합지원센터</u> 운영업무 위탁의 취소) ----- <u>육아종합지원센터</u>-----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u>보육정보센터</u>의 구성) ① <u>보육정보센터</u>-----<u>보육정보센터</u>----- -----<u>보육전문요원</u>을----- -----	제12조(<u>육아종합지원센터</u>의 구성) ① <u>육아종합지원센터</u>-----<u>육아종합지원센터</u>----- <u>보육전문요원</u>과 <u>전문인력</u>을 -----

현행	개정안
② <u>보육정보센터</u>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간호사, <u>영양사</u>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u>보육정보센터</u>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최소 4명 이상의 상근 종사자를 두어야 하며 그 외에는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u>보육정보센터</u>----- ----- ----- ④ (생략)	② <u>육아종합지원센터</u>----- ----- ----- -----<u>영양사, 특수교사, 행정원, 카페 관리자 등의</u>--- <u>육아종합지원센터</u>----- ----- ----- ③ <u>육아종합지원센터</u>----- -----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보육정보센터의 업무) ① <u>보육정보센터</u>----- 1. (생략) 2. 어린이집 평가인증 <u>조력</u> 및 상담 4. ~ 9. (생략) (신설) (신설) (신설)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u>보육정보센터</u>----- -----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① <u>육아종합지원센터</u>----- 1. (현행과 같음) 2. 어린이집 평가인증 <u>컨설팅</u> 및 상담 4. ~ 9. (현행과 같음) 10. 부모에 대한 육아교육 11. 장난감 대여 및 체험·놀이 공간 제공 12.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 13. ② <u>육아종합지원센터</u>----- -----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보육정보센터의 제정) ① (생략) ② <u>보육정보센터</u> 직원의 보수는 <u>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보육정보센터 직원 인건비 등 지급기준에 따른다.</u>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u>육아종합지원센터</u> 직원의 보수는 <u>일반직 공무원 8급의 보수 등 지급기준에 따르며, 센터장은 예산·사업 규모·종사자 수 등에 따라 전문(전문)계약직 공무원 ‘나급’ 또는 ‘다급’ 기준을 적용한다. 그 외의 사항은 고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재무회계 기준을 적용한다.</u>
제15조(센터운영위원회) ①<u>보육정보센터</u>----- <u>보육정보센터</u> ----- 1. <u>보육정보센터</u>----- 2. <u>보육정보센터</u>----- 3. <u>보육정보센터</u>----- ② (생략) ③ ----- <u>보육정보센터</u>----- ⑤ (생략) ④ (생략) ⑤ ----- <u>보육정보센터</u>----- ⑥ (생략) ⑦ (생략)	제15조(센터운영위원회) ①<u>육아종합지원센터</u>----- <u>육아종합지원센터</u> ----- 1. <u>육아종합지원센터</u>----- 2. <u>육아종합지원센터</u>----- 3. <u>육아종합지원센터</u>----- ② (현행과 같음) ③ ----- <u>육아종합지원센터</u>-----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 <u>육아종합지원센터</u>----- ⑦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제16조(시립어린이집 설치) ① 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감안하여 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u>저소득층 밀집지역</u>,	제16조(시립어린이집 설치) ① 시장은 ----- ----- -----<u>저소득층 밀집지역</u>

현행	개정안
공장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및 농어촌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법이 정하는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u>분기별로 정례회를 갖고 필요 시 임시회를 개최</u>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생략)	제26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u>보육정원 30명 이하 어린이집은 연 2회, 31명 이상 어린이집은 연 4회 분기별로 정례회를 개최하며 필요할 경우 임시회를 개최</u>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① ~ ④ (생략) ⑤ ----- <u>보육정보센터</u> -----	제27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u>육아종합지원센터</u> -----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제안자 : 고은정 · 이윤승 · 왕성옥 · 김운숙 · 박사동 · 이길용 · 이영희 의원

□ 개정 이유

-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보육정보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난해 개정되어 2013년 12월 5일자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 그간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사항임

□ 주요내용

-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모두 변경
(제5조,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27조)
- 아이러브맘카페 및 부모들의 공동육아 정보나눔터·체험 및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육아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육아종합지원 센터업무를 보완.(제13조)
-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의 구성 및 보수 등 지급기준을 기준에 맞게 변경.(제14조)
-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정례회 개최를 30명 이하 어린이집은 연 2회, 31명 이상 어린이집은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
(제26조)

고양시의회 제18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4년 2월 28일

고양시조례 제1581호

고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

고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문화예술과
입 안 자	과 장 직위·성명	문화예술과장 유 한 우
	팀 장 직위·성명	문화예술팀장 김 봉 민
	담 당 자 성명·전화	유 경 아 (3383)

고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

□ 폐지이유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심의회 및 설치, 관리에 관련된 사항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었으나 2011년 11월 25일 개정으로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이 삭제됨.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문화예술진흥 조례」에 건축물 미술장식(작품) 심의회 및 설치,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동 조례 폐지”

고양시의회 제18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4년 2월 28일

고양시조례 제1582호

고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초기대응담당자”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동대처 등 재난 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고 한다)의 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대책본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 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 대책본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대책본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

제4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 시, 「고양시 재난 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대책본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5. 해상·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
6.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재해 발생

제5조(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하며, 통합지휘소는 통합지휘소장, 현장지휘관, 실무반으로 구성한다.

1. 통합지휘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며, 재난현장을 통합 지휘한다.
 2. 현장지휘관은 해당되는 재난관련 국사업소장이 된다.
 3. 통합지휘소에는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의 실무반을 두며,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② 통합지휘소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 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

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대책본부의 장은 통합지휘소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휘소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7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 ①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통합 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휘소의 위치, 소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 지휘관을 통합 지휘소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소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 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 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9조(재난지역 주민대피)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 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 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0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 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의 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소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 할 수 있다.

제12조(재난현장 출동지원) ① 대책본부의 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 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3절 재난현장 조치

제13조(통합지휘소의 위치) ①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휘소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

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소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현장 통합대응) 소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 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의 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 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 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의 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 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제18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소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

반 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19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 대책본부의 장은 긴급 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대책본부의 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제21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통합지휘소 철수) 소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 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 제6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3. 제9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4. 제10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5. 제12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요청
6. 제16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7.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8. 제19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9. 제20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
10. 제21조에 따른 복구체계의로의 전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입 안 자	과장 직위·성명	안전총괄과장 성 송 제
	팀장 직위·성명	재난관리팀장 배 규 준
	담당자 직위·성명	김 정 회 031-8075-2984

고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에 본 조례에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총칙(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목적,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함
-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제4조부터 제6조까지)
 -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구성 및 임무, 업무연락관 파견 등을 규정함
-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제7조부터 제20조까지)
 - 재난현장 출동, 조치, 긴급복구 등을 규정함
-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 복구체계로의 전환, 통합지휘소 철수, 권한의 위임 등을 규정함

고양시 고시 제2014 - 66호

고양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수립(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2006-5020호(2006.02.06.)로 고시된 고양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수립(변경),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2. 28.

고 양 시 장

■ 고양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고시

1. 도시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명칭: 고양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산145-1번지 일원

나. 면적

구 분	면 적(㎡)			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고양 일산 덕이 도시개발구역	658,362.0	감 367.2	657,994.8	지적불부합 및 확정측량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계획적 개발을 통한 건전한 도시발전 유도
- 적정 규모의 도시기반시설 확보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가. 시행자

- 지정: 고양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박정수
- 변경: 고양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심병욱

나. 주소

- 지정: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309-19번지 경성빌딩 3층
- 변경: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로 91번길 24 하이빌 매동 101호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2006년 ~ 환지처분예정일(2014.12.31.)

나. 시행방법: 도시개발법 의한 환지방식

6. 인구수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11.04)	변 경	비 고
계 획 인 구(인)	15,453	15,477	
계 획 세 대(세대)	5,151	5,159	
세 대 당 인 구	3.0인/세대	3.0인/세대	
인 구 밀 도(인/ha)	235	235	

구 분		면 적(m ²)		세 대 수		인 구(인)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345,218.3	344,595.9	5,151	5,159	15,453	15,477	증 8
단 독 주 택 용 지		4,883.8	4,835.8	64	64	192	192	-
공 동 주 택 용 지 (아파트)	소 계	321,598.7	320,057.1	4,915	4,915	14,745	14,745	-
	1 블 록	43,136.8	43,070.0	694	694	2,082	2,082	-
	2 블 록	82,143.9	81,819.1	1,234	1,234	3,702	3,702	-
	3 블 록	31,557.0	31,128.0	433	433	1,299	1,299	-
	4 블 록	107,180.4	106,814.0	1,690	1,690	5,070	5,070	-
	5 블 록	57,580.6	57,226.0	864	864	2,592	2,592	-
준 주 거 용 지		18,735.8	19,703.0	172	180	516	540	증 8

○ 세대당 인구: 3.0인/세대

○ 단독주택용지 필지별 4세대, 준주거용지 필지별 4세대 기준

7. 개발계획 및 도시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표(변경)

구 분	기 정('11.04)		변 경		증감면적 (㎡)	비 고
	면 적 (㎡)	구성비 (%)	면 적 (㎡)	구성비 (%)		
전체면적	658,362.0	100.00	657,994.8	100.00	-367.2	
주 거 용 지	345,218.3	52.44	344,595.9	52.37	-622.4	
단 독 주 택 용 지	4,883.8	0.74	4,835.8	0.74	-48.0	
공 동 주 택 용 지	321,598.7	48.85	320,057.1	48.64	-1,541.6	
아 파 트 용 지	321,598.7	48.85	320,057.1	48.64	-1,541.6	
준 주 거 용 지	18,735.8	2.85	19,703.0	2.99	967.2	
상 업 용 지	18,124.3	2.75	18,124.4	2.75	0.1	
도시기반시설용지	277,352.5	42.13	278,606.5	42.35	1,254.0	
도 로	116,587.6	17.71	119,395.5	18.15	2,807.9	
일반도로	115,576.1	17.56	118,384.0	18.00	2,807.9	
보행자전용도로	1,011.5	0.15	1,011.5	0.15	0.0	
공 원	75,638.7	11.49	75,518.3	11.48	-120.4	
근 린 공 원	64,673.7	9.82	64,553.3	9.81	-120.4	2개소
어 린 이 공 원	10,965.0	1.67	10,965.0	1.67	0.0	4개소
녹 지	32,518.2	4.94	31,084.6	4.73	-1,433.6	
완 충 녹 지	16,952.6	2.57	16,914.3	2.57	-38.3	4개소
경 관 녹 지	3,215.1	0.49	1,748.3	0.27	-1,466.8	3개소
공 공 공 지	12,350.5	1.88	12,422.0	1.89	71.5	10개소
학 교	52,608.0	7.99	52,608.1	7.99	0.1	
초 교	25,663.3	3.90	25,663.3	3.90	0.0	2개교
중 교	12,007.1	1.82	12,007.1	1.82	0.0	1개교
고 교	14,937.6	2.27	14,937.7	2.27	0.1	1개교
기 타 시 설 용 지	17,666.9	2.68	16,668.0	2.53	-998.9	
주 차 장	4,532.9	0.69	4,532.9	0.69	0.0	3개소
공 공 청 사	1,200.1	0.18	1,200.1	0.18	0.0	1개소
유 수 지	7,391.7	1.12	7,391.9	1.12	0.2	3개소(저류시설)
사회복지시설	1,250.0	0.19	1,250.0	0.19	0.0	1개소
종교시설	999.2	0.15	0.0	0.00	-999.2	폐지
농업용수로	2,293.0	0.35	2,293.1	0.35	0.1	1개소

※ 사업구역외 도로 6개 노선 미포함

※ 개발계획(변경)도: 게재 생략

나. 도시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처리계획

가) 가로망계획(변경)

구 분	폭 원 (m)	노선 수		연 장(m)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	22	22	6,408	6,408	106,861	108,139	
소 계	-	1	1	857	857	21,425	21,425	
대 로 3 류	25	1	1	857	857	21,425	21,425	
소 계	-	7	7	3,970	3,970	71,482	72,760	
중 로 1 류	20~22	3	3	2,028	2,028	42,352	42,352	
중 로 2 류	15~18	4	4	1,942	1,942	29,130	30,408	
소 계	-	14	14	1,581	1,581	13,954	13,954	
소 로 1 류	10~11	6	6	1,125	1,125	11,306	11,306	
소 로 2 류	8	1	1	146	146	1,168	1,168	
소 로 3 류	4~7	7	7	310	310	1,480	1,480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 사업구역외 도로 6개 노선 미포함

※ 가각, 가감속차로, 버스베이 면적 제외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기정	대로	2	1	30~35	간선도로	8,770	대로2-6 (화정동 428-12)	고양시계 (덕이동 329-1)	일반도로		06.10.23	
기정	대로	3	1	25	보조간선	857	대로2-1	중로1-1	일반도로		고양시 고시 제2007- 269호 (07.6.5)	
변경	대로	3	1	25	보조간선	857	대로2-1	중로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	20	집산도로	1,132	동측구역계 (산106-5)	남측구역계 (608-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2	22	집산도로	419	대로3-1	중로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3	22	집산도로	477	대로3-1	남측구역계 (산119)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426	대로3-1	중로1-1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1	18	집산도로	426	대로3-1	중로1-1	일반도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695	대로3-1	중로1-3	일반도로		고양시 고 시 제2007 -269호 (07.6.5)	
기정	중로	2	3	15	국지도로	387	중로1-3	중로2-2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4	15	집산도로	434	서측구역계 (555-3)	중로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382	중로2-3	중로2-3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30	중로2-3	소로1-1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	10~11	국지도로	299	중로2-3	중로2-2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130	소로1-5	소로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228	소로1-3	소로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6	11	국지도로	56	중로1-1	640-1	일반도로		고양시 고 시 제2009 -361호 (09.12.21)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46	중로2-2	남측구역계 (381-2)	일반도로		고양시 고 시 제2007 -269호 (07.6.5)	
기정	소로	3	1	4	국지도로	117	북측구역계 (산164-1)	북측구역계 (산151-2)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	6	특수도로	30	대로3-1	소로1-1	보행자 도로			
기정	소로	3	3	6	특수도로	30	대로3-1	소로1-1	보행자 도로			
기정	소로	3	4	6	특수도로	30	중로2-3	소로1-1	보행자 도로			
기정	소로	3	5	6	특수도로	30	중로2-3	소로1-1	보행자 도로			
기정	소로	3	6	4	특수도로	21	중로2-2	소로1-5	보행자 도로			
기정	소로	3	7	4	특수도로	52	중로2-2	소로1-3	보행자 도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1호선	대로 3-1호선	-도로연장 변경	○지적 불부합 및 확정측량으로 구역면적 감소에 따른 도로연장 변경
중로 2-1호선	중로 2-1호선	-도로폭원 변경	○실시설계 변경에 의한 경관녹지(②) 폐지에 따른 도로 폭원 변경(B = 15m → 18m)

1.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2) 환경보전계획(변경)

가) 공원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75,638.7	감 120.4	75,518.3	
근린공원	-	64,673.7	감 120.4	64,553.3	
1	덕이동 산145-1일 원	45,821.6	감 120.4	45,701.2	
2	덕이동 산131-7일 원	18,852.1	-	18,852.1	
어린이공원	-	10,965.0	-	10,965.0	
1	덕이동 산151-1일 원	2,876.0	-	2,876.0	
2	덕이동 산142-4일 원	2,281.8	-	2,281.8	
3	덕이동 582-2일 원	3,059.0	-	3,059.0	
4	덕이동 374-12일 원	2,748.2	-	2,748.2	

구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근린공원	- 면적 : 45,821.6㎡→45,701.2㎡ (감 120.4㎡)	○ 가감속차선 설치에 따른 근린공원 면적 변경
1		

나) 녹지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32,518.2	감 1,433.6	31,084.6	
완충녹지	-	16,952.6	감 38.3	16,914.3	
1	덕이동 산150일 원	5,593.1	감 3.2	5,589.9	
2	덕이동 산141-1일 원	4,827.6	증 0.2	4,827.8	
3	덕이동 361-32일 원	2,390.7	감 35.0	2,355.7	
4	덕이동 583-2일 원	4,141.2	감 0.3	4,140.9	
경관녹지	-	3,215.1	감 1,466.8	1,748.3	
1	덕이동 산151-1일 원	1,392.8	-	1,392.8	
2	덕이동 산106-1일 원	1,476.9	감 1,476.9	-	폐지
3	덕이동 640-1일 원	183.5	증 10.1	193.6	
4	덕이동 640-1일 원	161.9	-	161.9	
공공공지	-	12,350.5	증 71.5	12,422.0	
1	덕이동 627일 원	2,535.9	감 0.1	2,535.8	
2	덕이동 346-1일 원	1,578.2	증 0.1	1,578.3	
3	덕이동 375일 원	1,504.6	-	1,504.6	
4	덕이동 산116-2일 원	1,618.4	증 0.4	1,618.8	
5	덕이동 381-2일 원	3,004.0	증 1.2	3,005.2	
6	덕이동 640-1일 원	341.6	감 0.2	341.4	
7	덕이동 640-1일 원	1,767.8	증 0.1	1,767.9	
8	덕이동 640-3일 원	-	증 38	38.0	신설
9	덕이동 372-5일 원	-	증 16	16.0	신설
10	덕이동 372-2일 원	-	증 16	16.0	신설

구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완충녹지		
1	- 면적 : 5,593.1㎡→5,589.9㎡(감 3.2㎡)	○가감속차선 설치에 따른 완충녹지 면적변경
2	- 면적 : 4,827.6㎡→4,827.8㎡(증 0.2㎡)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3	- 면적 : 2,390.7㎡→2,355.7㎡(감 35.0㎡)	○가감속차선 설치에 따른 완충녹지 면적변경
4	- 면적 : 4,141.2㎡→4,140.9㎡(감 0.3㎡)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경관녹지		
2	- 폐지	○중로 2-1호선 실시설계 변경에 따른 경관녹지폐지
3	- 면적 : 183.5㎡→193.6㎡(증 10.1㎡)	○단독주택용지 진출입부 폭원 축소로 면적변경
공공공지		
1	- 면적 : 2,535.9㎡→2,535.8㎡(감 0.1㎡)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2	- 면적 : 1,578.2㎡→1,578.3㎡(증 0.1㎡)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4	- 면적 : 1,618.4㎡→1,618.8㎡(증 0.4㎡)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5	- 면적 : 3,004.0㎡→3,005.2㎡(증 1.2㎡)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6	- 면적 : 341.6㎡→341.4㎡(감 0.2㎡)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7	- 면적 : 1,767.8㎡→1,767.9㎡(증 0.1㎡)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8	- 신설(면적 : 38.0㎡)	○단독주택용지내 쓰레기투입구 설치를 위한 공공공지 신설
9	- 신설(면적 : 16.0㎡)	○준주거용지내 쓰레기투입구 설치를 위한 공공공지 신설
10	- 신설(면적 : 16.0㎡)	○준주거용지내 쓰레기투입구 설치를 위한 공공공지 신설

3) 공공시설계획(변경)

가) 공공청사계획(변경없음)

나) 사회복지시설계획(변경없음)

다) 학교시설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52,608.0	증 0.1	52,608.1	
초등학교	-	25,663.3	-	25,663.3	
1	덕이동 350-1일 원	11,999.5	-	11,999.5	
2	덕이동 379-28일 원	13,663.8	-	13,663.8	
중학교	-	12,007.1	-	12,007.1	
3	덕이동 353일 원	12,007.1	-	12,007.1	
고등학교	-	14,937.6	-	14,937.7	
4	덕이동 381-16일 원	14,937.6	증 0.1	14,937.7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고등학교 4	- 면적 : 14,937.6㎡→14,937.7㎡ (증 0.1㎡)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4) 방재시설계획(변경)

가) 우수지계획(변경)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우수지	-	16,627.2	증 0.2	16,627.4	
1	덕이동 626-3일원	5,514.5	증 0.1	5,514.6	
2	덕이동 555-4일원	1,877.2	증 0.1	1,877.3	
3	덕이동 572-1일원	9,235.5	-	9,235.5	근린공원 내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우수지		
1	- 면적 : 5,514.5㎡→5,514.6㎡(증 0.1㎡)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2	- 면적 : 1,877.2㎡→1,877.3㎡(증 0.1㎡)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5) 기타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8. 도시개발구역외 기반시설 설치 계획 (변경)

- 위치: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330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사업의 명칭: 고양 일산 덕이 도시개발구역외 도시계획시설사업
- 사업시행자: 고양 일산 덕이 도시개발사업 조합(시행예정)
- 시행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 시행기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일~도시개발사업 준공전까지
- 설치비용 부담: 고양 일산 덕이 도시개발사업 조합

도로계획

구분	폭원(m)	기능	연장(m)	사용형태	비고
소계	-	-	1,330		
중로 1-100호선	20.8~45.8	보조간선도로	200	일반도로	덕이동 549-7~덕이동 608-1
중로 1-101호선	21~42	집산도로	380	일반도로	덕이동 416-2~덕이동 339-31
중로 1-102호선	22~42	보조간선도로	263	일반도로	덕이동 319-3(대로2-1)~덕이동 338-28
중로 1-103호선	20~26	보조간선도로	186	일반도로	덕이동 590~중로1-1
소로 2-341호선	9~11	국지도로	116	일반도로	덕이동 381-8(소로일산2-338)~덕이동 382-31
소로 3-467호선	9~11	국지도로	185	구간별 보차혼용도로	대로2-1~중로2-2

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내용 반영

기반시설 설치비용

구 분	금 액(백만원)	비 고
도로 6개 노선	49,028	공사비 및 보상비 포함

9. 재원조달계획(변경)

기반시설 설치비용

구 분	사업비(백만원)		구성비(%)	비 고
	당초	변경		
계	344,753	344,753	100.0	
공 사 비	48,000	48,000	13.9	
부 담 금	63,187	63,187	18.3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부담금 등
지장물 처리비 및 군부대 대체시설 공사비	75,000	75,000	21.8	보상비 및 공사비, 폐기물처리비
구역외 기반시설 설치비	52,313	52,313	15.2	보상비 및 공사비
학교용지 기부채납 비용	41,753	41,753	12.1	
기 타	64,500	64,500	18.7	

※ 금융비용은 제외

※ 구역외 기반시설: 도로 6개 노선, 배수로

재원조달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단 가 (천원/㎡)	금 액 (백만원)	비 고
		당초	변경	변경후			
계		70,400.7	감 1,628.5	68,772.2	-	202,125	
일반체비지 용지		39,197.7	감 1,829.4	37,368.3	3,961 ^{주1)}	148,023	주거 및 상업용지 등
기 타 체비지 용 지	소 계	31,203.0	증 200.9	31,403.9	-	54,102	
	주차장	4,532.9	-	4,532.9	2,747	12,452	
	학교	25,670.9	-	25,670.9	1,550	39,790	
	공공청사	-	증 1,200.1	1,200.1	1,550	1,860	
	종교시설	999.2	감 999.2	-	2,170	-	

주1) 일반 체비지 용지 평균 단가

10.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 : [붙임1]

1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붙임2]

12. 법 제11조 제8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기간(변경 없음)

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 기간: 개발계획수립 고시일로부터 1년

13.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5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 이상 열람

■ 고양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고양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계획적 개발을 통한 건전한 도시발전 유도
- 적정 규모의 도시기반시설 확보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덕이동 산145-1번지 일원

나. 면적

구 분	면 적(㎡)			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고양 일산 덕이 도시개발구역	658,362.0	감 367.2	657,994.8	지적불부합 및 확정측량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가. 시행자

- 기정: 고양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박정수
- 변경: 고양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심병욱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2006 ~ 환지처분에정일(2014.12.31.)

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변경없음)

가. 시행방식: 도시개발법 의한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붙임2]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5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 이상 열람

[붙임1]

□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일련 번호	구분	지 번	지 목	면적 (㎡)		소유자 이름	주소	변경사유
				지적	편입			
1	기정	304-31	도	344	1	계		가감속차선부 제척
					0.30	이원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20 문춘마을 1703-202	
					0.30	이원준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20 문춘마을 1703-202	
					0.20	김현미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20 문춘마을 1703-202	

일련 번호	구분	지 번	지 목	면적 (㎡)		소유자	주소					변경사유	
				지적	편입	이름							
	변경	304-31	도	344	0.20	이효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20	문촌마을					
					-	계							
					-	이원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20	문촌마을					
					-	이원준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20	문촌마을					
					-	김현미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20	문촌마을					
					-	이효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20	문촌마을					
2	기정	304-45	도	1,441	213	계						가감속차선부 제척	
					63.9	이원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20	문촌마을					
					63.9	이원준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20	문촌마을					
					42.6	김현미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20	문촌마을					
					42.6	이효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20	문촌마을					
	변경	304-45	도	1,441	-	계							
					-	이원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20	문촌마을					
					-	이원준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20	문촌마을					
					-	김현미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20	문촌마을					
					-	이효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20	문촌마을					
4	기정	304-58	임	425	220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참조 : 국유재산 관리 담당)	지적분할에따른 편입토지변경					
	변경	304-101	임	221	221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참조 : 국유재산 관리 담당)						
5	기정	304-69	대	990	982	계						지적분할에따른 편입토지변경	
					687.4	김재석	서울 양천구 신정동31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929-504						
					98.2	김광수	서울 양천구 신정동328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28-202						
					98.2	박기현	서울 양천구 신정동328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19-202						
					98.2	이용호	서울 양천구 신정동327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12-304						
	변경	304-103	대	982	982	계							
					687.4	김재석	서울 양천구 신정동31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929-504						
					98.2	김광수	서울 양천구 신정동328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28-202						

일련 번호	구분	지 번	지 목	면적 (㎡)		소유자 이름	주소	변경사유
				지적	편입			
6	기정	304-75	대	1,796	98.2	박기현	서울 양천구 신정동328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19-202	지적분할에 따른 편입토지변경
					98.2	이용호	서울 양천구 신정동327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12-304	
					481	계		
					336.7	김재석	서울 양천구 신정동31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929-504	
					48.1	김광수	서울 양천구 신정동328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28-202	
	변경	304-104	대	481	48.1	박기현	서울 양천구 신정동328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19-202	
					48.1	이용호	서울 양천구 신정동327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12-304	
					481	계		
					336.7	김재석	서울 양천구 신정동31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929-504	
					48.1	김광수	서울 양천구 신정동328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28-202	
7	기정	304-76	잡	2,783	55	계		지적분할에 따른 편입토지변경
					38.5	김재석	서울 양천구 신정동31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929-504	
					5.5	김광수	서울 양천구 신정동328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28-202	
					5.5	박기현	서울 양천구 신정동328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19-202	
					5.5	이용호	서울 양천구 신정동327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12-304	
	변경	304-105	잡	55	55	계		
					38.5	김재석	서울 양천구 신정동31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929-504	
					5.5	김광수	서울 양천구 신정동328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28-202	
					5.5	박기현	서울 양천구 신정동328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19-202	
					5.5	이용호	서울 양천구 신정동327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12-304	
8	기정	309-38	임	266	42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참조 : 국유재산 관리 담당)	가감속차선부 제척
	변경	309-38	임	266	-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참조 : 국유재산 관리 담당)	

일련 번호	구분	지 번	지 목	면적 (㎡)		소유자 이름	주소	변경사유
				지적	편입			
9	기정	309-45	대	36	11	조용유	서울 양천구 목동 90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231-302	가감속차선부 제척
	변경	309-45	대	36	-	조용유	서울 양천구 목동 90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231-302	
11	기정	309-59	도	298	8	산림청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내 서울 국유림 관리소(참조:이영섭)	가감속차선부 제척
	변경	309-59	도	298	-	산림청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내 서울 국유림 관리소(참조:이영섭)	
12	기정	309-76	임	150	81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참조 : 국유재산 관리 담당)	가감속차선부 제척
	변경	309-76	임	150	-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참조 : 국유재산 관리 담당)	
13	기정	309-79	대	13	11	고양시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가감속차선부 제척
	변경	309-79	대	13	-	고양시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14	기정	309-84	대	262	1	김동익	서울 은평구 갈현동 308-3	가감속차선부 제척
	변경	309-84	대	262	-	김동익	서울 은평구 갈현동 308-3	
15	기정	309-85	도	583	81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지적분할에 따른 편입토지 변경
	변경	309-120	도	80	80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31	기정	338-05	구	26	26	파주농조	파주시 금촌면 금촌리 80-23	소유자변경
	변경	338-05	구	26	2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2	기정	338-06	구	8	8	파주농조	파주시 금촌면 금촌리 80-23	지번합병 및 소유자변경
	기정	338-08	구	432	432	파주농조	파주시 금촌면 금촌리 80-23	
	변경	338-06	구	440	44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96	기정	360-07	임	513	513	김형식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420-11	소유자변경
	변경	360-07	임	513	513	계		
					347.82	신현남	서울 강남구 대치동 역삼동 792-38	
					165.18	아시아신탁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2 코스모타워 13층	
97	기정	360-10	임	172	172	김형식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420-11	소유자변경
	변경	360-10	임	172	172	계		
					116.62	신현남	서울 강남구 대치동 역삼동 792-38	
					55.38	아시아신탁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2 코스모타워 13층	
98	기정	360-11	임	189	189	코프란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388	소유자변경
	변경	360-11	임	189	189	계		
					94.92	신현남	서울 강남구 대치동 역삼동 792-38	
					94.08	아시아신탁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2 코스모타워 13층	
112	기정	361-09	대	289	289	김재용	서울 강북구 미아9동 258-601 대성빌라 1-305	소유자변경

일련 번호	구분	지 번	지 목	면적 (㎡)		소유자 이름	주소	변경사유
				지적	편입			
	변경	361-09	대	289	289	이태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로 91번길 8-5	
123	변경	361-20	대	1,610	1,610	국(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참조:국유재산 관리 담당)	소유자변경
	변경	361-20	대	1,610	1,610	덕이조합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로 91번길 24 매동 101호	
133	기정	361-30	임	1,238	1,222	계		지적분할에 따른 편입토지변경
					844.75	다올부동산신탁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3층	
					289.96	아시아신탁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2 코스모타워 13층	
					87.29	최영숙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산112	
	변경	361-45	임	1,163	1,163.00	계		
					803.96	다올부동산신탁 외2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2층	
					275.96	아시아신탁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2 코스모타워 13층	
					83.08	최영숙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산112	
	변경	361-46	임	25	25.00	계		
					1.79	최영숙외2인	고양시 덕이동 산112	
					17.28	다올부동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2층	
					5.93	아시아신탁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2 코스모타워 13층	
150	기정	362-03	구	19	19	파주농조	파주시 금촌면 금촌리 80-23	소유자변경
	변경	362-03	구	19	1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59	기정	362-12	임	1,409	1,409	코프란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388	소유자변경
	변경	362-12	임	1,409	1,409	아시아신탁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2 코스모타워 13층	
184	기정	363-04	전	91	91	백유희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산92-6	소유자변경
	변경	363-04	전	91	91	이운자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476 탄현마을 804-506	
212	기정	368-00	전	2,298	2,298	계		소유자변경
					1,558.0	드림리츠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6 현대해상빌딩 19층	
					370.0	디더블유개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24 동문굿모닝타워2 321호	
					370.0	코프란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388	
	변경	368-00	전	2,298	2,298	계		
					1,558.0	다올부동산신탁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3층	
					740.0	아시아신탁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2 코스모타워 13층	

일련 번호	구분	지 번	지 목	면적 (㎡)		소유자 이름	주소	변경사유
				지적	편입			
246	변경	372-30	도	378	378	국(산림청)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내 서울 국유림 관리소(참조:이영섭)	소유자변경
	변경	372-30	도	378	378	덕이조합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1로 91번길 24 매동 101호	
262	기정	373-09	잡	3,783	482	삼화요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372-10	지적분할에 따른 편입토지 변경
	변경	373-17	잡	482	482	삼화요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372-10	
263	기정	373-10	잡	13,220	3,712	윤승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373-3	지적분할에 따른 편입토지 변경
	변경	373-18	잡	3,824	3,824	윤승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373-3	
	변경	373-20	잡	16	16	윤승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373-3	
300	기정	379-06	대	82	82	이상교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425	소유자변경
	변경	379-06	대	82	82	계		
					55.596	정성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294-1 운서재 301호	
					13.202	디더블유개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24 동문굿모닝타 워2 321호	
					13.202	코프란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388	
301	변경	379-07	대	108	108	국(산림청)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내 서울 국유림 관리소(참조:이영섭)	소유자변경
	변경	379-07	대	108	108	덕이조합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1로 91번길 24 매동 101호	
302	기정	379-08	대	88	88	함인숙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552 주공아파트 324-101	소유자변경
	변경	379-08	대	88	88	계		
					29.34	강주호	서울 구로구 온수동 45-32 선원빌라 8-303	
					29.33	이대선	파주시 교하읍 목동리 101 교하2차현대아파 트 207-1304	
					29.33	박봉재	김포시 북변동 235-11 인창연립 105	
303	기정	379-09	대	140	140	함인숙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552 주공아파트 324-101	소유자변경
	변경	379-09	대	140	140	계		
					46.67	강주호	서울 구로구 온수동 45-32 선원빌라 8-303	
					46.67	이대선	파주시 교하읍 목동리 101 교하2차현대아파 트 207-1304	
					46.66	박봉재	김포시 북변동 235-11 인창연립 105	
304	기정	379-10	대	134	134	대한주택보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305	기정	379-11	대	122	122	유금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4동 1309-19 신화빌 라 401호	소유자변경
	변경	379-11	대	122	122	계		

일련 번호	구분	지 번	지 목	면적 (㎡)		소유자 이름	주소	변경사유
				지적	편입			
					82.716	추선주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9 정보아파트 에이-1512	
					19.642	디더블유개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24 동문굿모닝타워2 321호	
					19.642	코프란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388	
306	기정	379-14	전	288	288	국(산림청)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내 서울 국유림 관리소(참조:이영섭)	소유자변경
	변경	379-14	전	288	288	덕이조합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1로 91번길 24 매동 101호	
307	기정	379-15	전	222	222	함인숙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552 주공아파트 324-101	소유자변경
	변경	379-15	전	222	222	계		
					74	강주호	서울 구로구 온수동 45-32 선원빌라 8-303	
					74	이대선	파주시 교하읍 목동리 101 교하2차현대아파트 207-1304	
					74	박봉재	김포시 북변동 235-11 인창연립 105	
308	기정	379-16	전	324	324	국(산림청)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내 서울 국유림 관리소(참조:이영섭)	소유자변경
	변경	379-16	전	324	324	덕이조합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1로 91번길 24 매동 101호	
309	기정	379-17	대	48	48	함인숙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552 주공아파트 324-101	소유자변경
	변경	379-17	대	48	48	계		
					16	강주호	서울 구로구 온수동 45-32 선원빌라 8-303	
					16	이대선	파주시 교하읍 목동리 101 교하2차현대아파트 207-1304	
					16	박봉재	김포시 북변동 235-11 인창연립 105	
310	기정	379-18	대	62	62	함인숙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552 주공아파트 324-101	소유자변경
	변경	379-18	대	62	62	계		
					20.67	강주호	서울 구로구 온수동 45-32 선원빌라 8-303	
					20.67	이대선	파주시 교하읍 목동리 101 교하2차현대아파트 207-1304	
					20.66	박봉재	김포시 북변동 235-11 인창연립 105	
311	기정	379-19	대	140	140	국(산림청)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내 서울 국유림 관리소(참조:이영섭)	소유자변경
	변경	379-19	대	140	140	덕이조합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1로 91번길 24 매동 101호	
312	기정	379-20	전	209	209	국(산림청)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내 서울 국유림 관리소(참조:이영섭)	소유자변경

일련 번호	구분	지 번	지 목	면적 (㎡)		소유자 이름	주소	변경사유
				지적	편입			
	변경	379-20	전	209	209	덕이조합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로 91번길 24 매동 101호	
313	기정	379-21	전	404	404	함인숙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552 주공아파트 324-101	소유자변경
	변경	379-21	전	404	404	계		
					134.67	강주호	서울 구로구 온수동 45-32 선원빌라 8-303	
					134.67	이대선	파주시 교하읍 목동리 101 교하2차현대아파트 207-1304	
					134.66	박봉재	김포시 북변동 235-11 인창연립 105	
314	기정	379-22	전	93	93	국(산림청)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내 서울 국유림 관리소(참조:이영섭)	소유자변경
	변경	379-22	전	93	93	덕이조합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로 91번길 24 매동 101호	
315	기정	379-23	전	104	104	국(산림청)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내 서울 국유림 관리소(참조:이영섭)	소유자변경
	변경	379-23	전	104	104	덕이조합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로 91번길 24 매동 101호	
316	기정	379-24	전	155	155	국(산림청)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내 서울 국유림 관리소(참조:이영섭)	소유자변경
	변경	379-24	전	155	155	덕이조합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로 91번길 24 매동 101호	
317	기정	379-25	전	64	64	국(산림청)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내 서울 국유림 관리소(참조:이영섭)	소유자변경
	변경	379-25	전	64	64	덕이조합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로 91번길 24 매동 101호	
318	기정	379-26	전	169	169	국(산림청)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내 서울 국유림 관리소(참조:이영섭)	소유자변경
	변경	379-26	전	169	169	덕이조합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로 91번길 24 매동 101호	
319	기정	379-27	전	32	32	국(산림청)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내 서울 국유림 관리소(참조:이영섭)	소유자변경
	변경	379-27	전	32	32	덕이조합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로 91번길 24 매동 101호	
330	기정	381-10	임	1,323	1,323	대한주택보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지목변경
	변경	381-10	답	1,323	1,323	대한주택보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344	기정	555-28	잡	60	60	다올부동산신탁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2층	소유자변경
	변경	555-28	잡	60	60	대한주택보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345	기정	555-29	잡	58	58	다올부동산신탁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2층	소유자변경
	변경	555-29	잡	58	58	대한주택보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일련 번호	구분	지 번	지 목	면적 (㎡)		소유자 이름	주소	변경사유
				지적	편입			
354	기정	571-20	전	165	165	국(산림청)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내 서울 국유림 관리소(참조:이영섭)	소유자변경
	변경	571-20	전	165	165	덕이조합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로 91번길 24 매동 101호	
365	기정	575-04	구	34	34	파주농조	경기도 파주시 금촌읍 금촌리 80-23	소유자변경
	변경	575-04	구	34	3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68	기정	575-07	구	3	3	파주농조	경기도 파주시 금촌읍 금촌리 80-23	소유자변경
	변경	575-07	구	3	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31	기정	594-02	전	3,332	3,332	다올부동산신탁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2층	소유자변경
	변경	594-02	전	3,332	3,332	대한주택보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434	기정	608-04	답	1,512	1,512	다올부동산신탁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2층	소유자변경
	변경	608-04	답	1,512	1,512	대한주택보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474	기정	640-07	구	40	40	파주농조	파주시 금촌면 금촌리 산18-4	소유자변경
	변경	640-07	구	40	4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80	기정	641-01	구	20	20	파주농조	파주시 금촌읍 금촌리 80-23	소유자변경
	변경	641-01	구	20	2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83	기정	산92-24	구	32	3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등록전환에따른 지번변경
	변경	370-11	구	33	3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91	기정	338-27	구	322	322	파주농조	파주시 금촌면 금촌리 산18-4	소유자변경
	변경	338-27	구	322	32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92	기정	338-28	구	188	188	파주농조	파주시 금촌면 금촌리 산18-4	소유자변경
	변경	338-28	구	188	18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93	기정	338-29	구	10	10	파주농조	파주시 금촌면 금촌리 산18-4	소유자변경
	변경	338-29	구	10	1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94	기정	산106-06	구	570	570	파주농조	파주시 금촌면 금촌리 산18-4	지번합병에따른등록전환 및 소유자변경
	기정	산145-05	구	84	84	파주농조	파주시 조리면 금촌리 80-23	
	기정	산146-01	구	141	141	파주농조	파주시 조리면 금촌리 80-23	
	변경	355-03	구	797	79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95	기정	359-26	임	5,971	5,971	성연달	327	소유자변경
	변경	359-26	임	5,971	5,971	대한주택보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496	기정	산107-01	임	507	507	국(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참조:국 유재산관리담당)	등록전환에따른편입 토지변 경
	변경	360-22	임	272	272	국(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참조:국 유재산관리담당)	
497	기정	산108-00	임	7,736	1,211	대한주택보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지적분할에 따른 편입토지 변경

일련 번호	구분	지 번	지 목	면적 (㎡)		소유자	주소	변경사유
				지적	편입	이름		
	변경	산108-01	임	1,296	1,296	계		
					259.20	김양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태영아파트 105-502	
					77.76	마다희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05-3	
					103.68	김혜경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454-4 행복한서해그랑블아파트 506-401	
					77.76	박해미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45-38 한마음탑스빌 202	
					777.60	아시아신탁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2 코스모타워13층	
	변경	산108-02	임	50	50.00	계		
					10.00	김양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태영아파트 105-502	
					3.00	마다희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05-3	
					4.00	김혜경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454-4 행복한서해그랑블아파트 506-401	
					3.00	박해미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45-38 한마음탑스빌 202	
					30.00	아시아신탁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2 코스모타워13층	
502	기정	산114-05	구	810	810	파주농조	파주시 금촌면 금촌리 산18-4	등록전환에따른 소유자변경
	변경	362-33	구	820	82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11	기정	산118-07	임	21	21	국(산림청)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내 서울 국유림 관리소(참조:이영섭)	등록전환에따른 지번변경
	변경	374-20	임	26	26	덕이조합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1로 91번길 24 매동 101호	
518	기정	571-32	임	3,249	3,249	국(산림청)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내 서울 국유림 관리소(참조:이영섭)	소유자변경
	변경	571-32	임	3,249	3,249	덕이조합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1로 91번길 24 매동 101호	
564	기정	338-14	임	2,805	2,805	드림리츠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6 현대해상빌딩 19층	소유자변경
	변경	338-14	임	2,805	2,805	대한주택보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565	기정	338-15	임	2,355	2,355	드림리츠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6 현대해상빌딩 19층	소유자변경
	변경	338-15	임	2,355	2,355	대한주택보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566	기정	산147-04	구	1,115	1,115	파주농조	파주시 금촌면 금촌리 산18-4	등록전환에따른소유자변경
	변경	322-04	구	1,118	1,11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67	기정	산147-05	구	278	278	대한주택보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568	기정	338-16	임	1,504	1,504	드림리츠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6 현대해상빌딩 19층	소유자변경

일련 번호	구분	지 번	지 목	면적 (㎡)		소유자 이름	주소	변경사유
				지적	편입			
	변경	338-16	임	1,504	1,504	대 한주택보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570	기정	338-17	임	1,233	1,233	드림리츠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6 현대해상빌딩 19층	소유자변경
	변경	338-17	임	1,233	1,233	대 한주택보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571	기정	338-18	임	1,372	1,372	다올부동산신탁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2층	소유자변경
	변경	338-18	임	1,372	1,372	대 한주택보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575	기정	338-19	임	707	707	다올부동산신탁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2층	소유자변경
	변경	338-19	임	707	707	대 한주택보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576	기정	338-20	임	1,607	1,607	다올부동산신탁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2층	소유자변경
	변경	338-20	임	1,607	1,607	대 한주택보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578	기정	338-21	임	19,541	19,541	다올부동산신탁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2층	소유자변경
	변경	338-21	임	19,541	19,541	대 한주택보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585	기정	산92-25	구	857	358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지적분할에 따른 편입토지 변경
	변경	산92-32	구	358	358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합계	기정		전		212,486			174필지
			답		135,712			110필지
			구		18,288			56필지
			임		258,430			172필지
			대		21,795			57필지
			잡		6,555			9필지
			도		2,391			9필지
			계		655,657			587필지
	변경		전		212,486			174필지
			답		137,035			111필지
			구		18,304			53필지
			임		256,856			171필지
			대		21,772			54필지
			잡		6,683			10필지
			도		2,168			6필지
			계		655,304			579필지

[붙임2]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변경없음): 게재 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게재 생략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고양 일산 덕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이동 산145-1 번지 일원	658,362.0	감 367.2	657,994.8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변경	1	덕이동 산145-1 번지 일원	657,994.8	• 덕이지구 진입도로 지적 불부합 및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감 367.2㎡)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단독주택용지(블록형-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²)		획 지			비 고
		기 정	변 경	위 치	면 적(m²)		
					기 정	변 경	
R1	R1	4,883.8	4,835.8	R1	4,883.8	4,835.8	- 블록형 단독주택 - 분할(200m² 이상), 합병, 공동개발 가능

나) 공동주택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 정	변 경	위치	면 적(㎡)		
					기 정	변 경	
A1	A1	43,136.8	43,136.8	A1	43,136.8	43,136.8	- 분할, 합병, 공동개발 불가
A2	A2	82,143.9	81,821.8	A2	82,143.9	81,821.8	
A3	A3	31,557.0	31,131.1	A3	31,557.0	31,131.1	
A4	A4	107,180.4	106,817.4	A4	107,180.4	106,817.4	
A5	A5	57,580.6	57,230.0	A5	57,580.6	57,230.0	

다) 준주거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 정	변 경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N1	N1	3,538.6	3,538.6	N1-1	365.0	365.0	- 연접 두 필지 합병 및 공동 개발 가능 - 분할 불가
				N1-2	365.0	365.0	
				N1-3	365.0	365.0	
				N1-4	365.0	365.0	
				N1-5	365.0	365.0	
				N1-6	365.0	365.0	
				N1-7	591.0	591.4	
				N1-8	757.6	757.4	
N2	N2	1,731.2	1,731.2	N2-1	277.4	277.4	- 연접 두 필지 합병 및 공동 개발 가능 - 분할 불가
				N2-2	416.8	416.8	
				N2-3	380.0	380.0	
				N2-4	405.0	405.0	
				N2-5	252.0	251.6	
N3	N3	3,357.3	4,356.5	N3-1	543.0	543.0	- 연접 두 필지 합병 및 공동 개발 가능 - 분할 불가
				N3-2	599.2	599.2	
				N3-3	605.4	605.4	
				N3-4	556.8	556.8	
				N3-5	556.8	556.8	
				N3-6	496.1	496.1	
				N3-7	-	394.7	
				N3-8	-	604.5	
N4	N4	5,176.6	5,176.6	N4-1	600.1	600.1	- 연접 두 필지 합병 및 공동 개발 가능 - 분할 불가
				N4-2	378.7	378.7	
				N4-3	378.6	378.6	
				N4-4	346.0	346.0	
				N4-5	370.0	370.0	
				N4-6	514.9	514.9	
				N4-7	600.1	600.1	
				N4-8	378.7	378.7	
				N4-9	378.6	378.6	
				N4-10	346.0	346.0	
				N4-11	370.0	354.0	
				N4-12	514.9	514.9	
N5	N5	4,932.1	4,932.1	N5-1	509.9	509.9	- 연접 두 필지 합병 및 공동 개발 가능 - 분할 불가
				N5-2	404.1	404.1	
				N5-3	404.1	404.2	
				N5-4	346.0	346.0	
				N5-5	346.0	345.9	
				N5-6	456.0	456.0	
				N5-7	509.9	509.9	
				N5-8	404.1	404.1	
				N5-9	404.1	404.1	
				N5-10	346.0	330.0	
				N5-11	346.0	346.0	
				N5-12	455.9	456.1	

라) 상업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 정	변 경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C1	C1	4,217.6	4,217.6	C1-1	747.2	747.2	- 연접 두 필지 합병 및 공동 개발 가능 - 분할 불가
				C1-2	1,029.5	1,029.5	
				C1-3	947.2	947.2	
				C1-4	998.3	998.3	
				C1-5	495.4	495.4	
C2	C2	4,157.7	4,157.4	C2-1	663.5	663.5	- 연접 두 필지 합병 및 공동 개발 가능 - 분할 불가
				C2-2	717.5	717.5	
				C2-3	627.3	627.3	
				C2-4	716.0	715.7	
				C2-5	716.1	716.1	
				C2-6	717.3	717.3	
C3	C3	4,824.0	4,823.9	C3-1	933.2	933.2	- 연접 두 필지 합병 및 공동 개발 가능 - 분할 불가
				C3-2	774.5	774.4	
				C3-3	774.5	774.6	
				C3-4	1,532.3	1,532.3	
				C3-5	809.5	809.4	
C4	C4	1,969.0	1,969.0	C4-1	690.0	690.0	- 연접 두 필지 합병 및 공동 개발 가능 - 분할 불가
				C4-2	724.5	724.5	
				C4-3	554.5	554.5	
C5	C5	1,968.7	1,969.0	C5-1	802.7	802.7	- 연접 두 필지 합병 및 공동 개발 가능 - 분할 불가
				C5-2	1,166.0	1,166.3	
C6	C6	987.3	987.5	C6-1	987.3	987.5	- 연접 두 필지 합병 및 공동 개발 가능 - 분할 불가

마) 기타시설용지(변경)

(1) 학교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²)		획 지			비 고
		기 정	변 경	위 치	면 적(m²)		
					기 정	변 경	
초1	초1	11,999.5	11,999.5	초1	11,999.5	11,999.5	
초2	초2	13,663.8	13,663.8	초2	13,663.8	13,663.8	
중1	중1	12,007.1	12,007.1	중1	12,007.1	12,007.1	
고1	고1	14,937.6	14,937.7	고1	14,937.6	14,937.7	

(2) 주차장용지(변경없음)

(3)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4)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없음)

(5) 종교시설용지(폐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획 지			비 고
		기 정	변 경	위 치	면 적(m')		
					기 정	변 경	
총1	총1	999.2	-	총1	999.2	-	폐지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단독주택용지(블럭형-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3) 준주거용지(변경없음)

4) 상업용지(변경없음)

5) 기타시설용지(변경)

가) 학교용지(변경없음)

나)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다)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라)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없음)

마) 종교시설용지(폐지)

바.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바) 단독주택용지(블럭형-변경없음)

사)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아) 준주거용지(변경없음)

자) 상업용지(변경없음)

차) 기타시설용지(변경)

구 분	도 면 번 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P1~P3 공1 사1,종 1	P1~P3 공1 사1,종1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 보도로 조성하여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성 -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 및 적치 금지 - 인접한 전면보도와 포장 재료, 색채, 높이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조성	결정도 참조
변경	P1~P3 공1, 사1	P1~P3 공1, 사1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 보도로 조성하여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성 -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 및 적치 금지 - 인접한 전면보도와 포장 재료, 색채, 높이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조성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가) 단독주택용지(블럭형-변경없음)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다) 준주거용지(변경없음)

라) 상업용지(변경없음)

마) 기타시설용지(변경)

구 분	도 면 번 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초1,초2, 중1,고1, P1-P3, 공1, 사1,종1	초1,초2, 중1,고1, P1-P3, 공1, 사1,종1	○ 주차장 설치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 - 주차공간은 가급적 지하로 하고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배치 권장 ○ 차량진·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교차로 가각부 차량진출입 불허) - 차량의 진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 다만, 비상시 차량출입이 요구되는 소방파출소 등은 결정도의 범위에서 전면출입 허용 - 인접한 공공청사는 2개 단위로 공동주차 출입과 공동주차시설 공간 확보를 권장(단,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의 경우는 예외) - 도로 건너편에 설치된 차량출입구로부터 20m 구간은 차량진·출입구 설치 규제 - 다음과 같은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 설치 규제 1. 교차로 가각부, 가감속차로 구간	결정도 참조
변경	초1,초2, 중1,고1, P1-P3, 공1,사1	초1,초2, 중1,고1, P1-P3, 공1,사1	○ 주차장 설치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 - 주차공간은 가급적 지하로 하고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배치 권장 ○ 차량진·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교차로 가각부 차량진출입 불허) - 차량의 진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 다만, 비상시 차량출입이 요구되는 소방파출소 등은 결정도의 범위에서 전면출입 허용 - 인접한 공공청사는 2개 단위로 공동주차 출입과 공동주차시설 공간 확보를 권장(단,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의 경우는 예외) - 도로 건너편에 설치된 차량출입구로부터 20m 구간은 차량진·출입구 설치 규제 - 다음과 같은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 설치 규제 1. 교차로 가각부, 가감속차로 구간	

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게재생략

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게재생략

고양시 고시 제2014 - 68호

고양 GB해제취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양 GB해제취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75-310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02월 28일

고 양 시 장

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58	가무네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현천동 128번지 일대	143,821	-	143,821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가무네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현천동 128번지 일대	현천동 283번지 일원 측량성과 반영 에 따른 구역경계 선형 일치	현천동 283번지 일원 지적선형과 구역경계 오기정정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267,311,268	-	267,311,268	100.00	
도 시 지 역		191,817,569	-	191,817,569	71.76	
주거 지역	소 계	34,659,195	-	34,659,195	12.97	
	전용주거지역	1,212,302	감)76,553	1,135,749	0.40	
	제1종전용주거지역	1,212,302	감)76,553	1,135,749	0.40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일반주거지역	31,556,373	증)76,553	31,632,926	11.86	
	제1종일반주거지역	10,221,983	증)76,553	10,298,536	3.87	
	제2종일반주거지역	10,627,316	-	10,627,316	3.98	
	제3종일반주거지역	10,707,074	-	10,707,074	4.01	
	준주거지역	1,890,520	-	1,890,520	0.71	
상업 지역	소 계	5,581,366	-	5,581,366	2.09	
	중상업지역	993,153	-	993,153	0.37	
	일반상업지역	4,480,034	-	4,480,034	1.68	
	근린상업지역	108,179	-	108,179	0.04	

구 분		면 적(m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공업 지역	소 계	66,000	—	66,000	0.02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66,000	—	66,000	0.02	
녹지 지역	소 계	150,537,715	—	150,537,715	56.32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150,537,715	—	150,537,715	56.32	
미 지 정		973,293	—	973,293	0.35	
관리 지역	소 계	40,565,944	—	40,565,944	15.18	
	관리지역	38,910	—	38,910	0.01	
	보전관리지역	19,508,056	—	19,508,056	7.30	
	생산관리지역	4,667,011	—	4,667,011	1.75	
	계획관리지역	16,351,967	—	16,351,967	6.12	
농림지역		34,927,755	—	34,927,755	13.07	

주) 지정면적은 고양시 고시 제2013-161호(2013.05.28) 고양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적임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취락명	위 치	용도구역		면 적 (m²)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중고개	덕양구 지축동 403-3 일원	제1종전용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 지역	38,625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엄격한 계획 기준(용적률, 건축물용도 등)으로 재산권행사 제한 문제 발생 - 타 취락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 상향
절골	덕양구 지축동 167-13 일원	제1종전용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 지역	37,928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

□ 대규모 취락(동산 취락)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 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소로	3	425	6	국지 도로	42	동산동 51-29	동산동 51-6	일반 도로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7-5177호 (07.12.17)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 덕3-425	소로 덕3-425	○최초 결정 51-6번지, 51-12번지 도로편입 기준 적용 도로선형 조정	○ 51-6번지일원 지적불부합지 지적 조정결과 도로편입면적이 최초 결정내용과 불일치로 재산권침해 최소를 위해 최초 결정내용에 근거하여 도로 선형 조정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규 모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통사항)	○대지규모 - 주택용지 · 최소개발면적 : 60㎡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상 주택호수 산정기준에 적합한 토지는 예외로 한다.) · 최대개발면적 <table><tr><td>구 분</td><td>면적기준</td><td>비 고</td></tr><tr><td>주거용 용지</td><td>1,000㎡</td><td></td></tr><tr><td>블록형 주택용지</td><td>제한사항 없음</td><td>「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사업지에 한함</td></tr><tr><td>비주거용 용지</td><td>2,000㎡</td><td></td></tr></table>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상 주택호수 산정기준에 적합한 토지로서 기존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와 블록형 주택용지로 개발하는 사업지는 예외로 하되 기존 대지규모 이상으로의 변경은 불가한다.)	구 분	면적기준	비 고	주거용 용지	1,000㎡		블록형 주택용지	제한사항 없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사업지에 한함	비주거용 용지	2,000㎡		
구 분	면적기준	비 고													
주거용 용지	1,000㎡														
블록형 주택용지	제한사항 없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사업지에 한함													
비주거용 용지	2,000㎡														
공동개발 대상필지		○공동개발 - 60㎡미만의 과소토지로서 인접한 토지가 동일소유자인 경우에 규제제어 - 건축물대장상 공유토지로서 등재된 토지인 경우에 권장제어													
분할합병 대상필지		○분할합병 - 과대필지 및 부정형필지, 도로의 폐쇄에 대하여 분할 및 합병을 권장제어 - 분할이 가능한 필지의 규모는 600㎡이상으로 권장제어 - 분할 및 합병시 모든 필지에 차량출입이 가능토록 하여야 함 ○필지교환 - 토지소유자간 합의하에 필지의 일부를 교환 - 부정형 필지의 정형화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권장 제어													

5.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기정

구 분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용 도	중규모 51취락, 소규모 41, 42취락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건축물 용도계획 참조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3층이하(처마밑 기준10m. 단, 연립주택은 10m이상 도로와 접한 필지에 한하여 4층까지 허용하되 1층 부분은 피로티를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이용) ※노외 주차장내 주차전용 건축물 입지시 3층이하	
배 치		-	
형 태		○건축물의 외벽은 주변경관 및 인접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을 권장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처리할 것을 권장제어 ○담장설치시 높이는 1.2m이하로 설치제어 - 담장 설치시 가능한 한 미설치하거나, 식재담장 (생울타리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를 권장	
색 채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인접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	
건축선		○ 6m이하 도로변 : 경계선으로부터 1.5m ○ 6m초과 도로변 :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 변경

구 분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용 도	중규모 51취락	◦ 건축물 용도계획 참조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3층이하(1층 부분에 피로티를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4층까지 허용) ※ 노외 주차장내 주차전용 건축물 입지시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건축물의 외벽은 주변경관 및 인접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을 권장 ◦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처리할 것을 권장제어 ◦ 담장설치시 높이는 1.2m이하로 설치제어 - 담장 설치시 가능한 한 미설치하거나, 식재담장 (생울타리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를 권장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인접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	
건축선		◦ 6m이하 도로변 : 경계선으로부터 1.5m ◦ 6m초과 도로변 :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2) 제1종 일반주거지역

■ 기정

구 분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용 도	대규모 77~79취락, 중규모 45~50, 52~72취락, 소규모 24~40,43취락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 건축물 용도계획 참조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대규모취락] ◦ 기준용적율 : 130%이하 ◦ 상한용적율 : 160%이하 (인센티브 부여시) [중·소규모취락] ◦ 기준용적율 : 120%이하 ◦ 상한용적율 : 150%이하 (인센티브 부여시)	
높 이		◦ 3층이하(처마밑 기준10m. 단, 연립주택은 10m이상 도로와 접한 필지에 한하여 4층까지 허용하되 1층 부분은 피로티를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이용) ※노외 주차장내 주차전용 건축물 입지시 3층이하	
배 치		-	
형 태		◦ 건축물의 외벽은 주변경관 및 인접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을 권장 ◦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처리할 것을 권장제어 ◦ 담장설치시 높이는 1.2m이하로 설치제어 - 담장 설치시 가능한 한 미설치하거나, 식재담장 (생울타리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를 권장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인접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	
건축선		[대규모취락] ◦ 8m이하 도로변 : 경계선으로부터 1.5m ◦ 8m초과 도로변 :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중소규모취락] ◦ 6m이하 도로변 : 경계선으로부터 1.5m ◦ 6m초과 도로변 :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 변경

구 분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용 도	대규모 77~79취락, 중규모 45~50, 52~72취락, 소규모 24~43취락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 건축물 용도계획 참조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대규모취락] ○ 기준용적률 : 150%이하 ○ 상한용적률 : 180%이하 (인센티브 부여시)	[중·소규모취락] ○ 기준용적률 : 140%이하 ○ 상한용적률 : 170%이하 (인센티브 부여시)	
높 이		○ 3층이하(1층 부분에 피로티를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4층까지 허용) ※ 노외 주차장내 주차전용 건축물 입지시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건축물의 외벽은 주변경관 및 인접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을 권장 ○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처리할 것을 권장제어 ○ 담장설치시 높이는 1.2m이하로 설치제어 - 담장 설치시 가능한 한 미설치하거나, 식재담장 (생울타리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를 권장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인접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		
건축선		[대규모취락] ○ 8m이하 도로변 : 경계선으로부터 1.5m ○ 8m초과 도로변 :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중·소규모취락] ○ 6m이하 도로변 : 경계선으로부터 1.5m ○ 6m초과 도로변 :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나.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기정

구 분	권장용도	허용용도(A)	불허용도
중규모 51 소규모 41, 4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다목 다가주택은 3가구이하 ○ 별표1 제2호 나목 다세대주택(3세대이하), 다목 연립주택(6세대 이하) ○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단, 안마원 제외, 바닥면적 합계 1,000㎡미만) ○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단, 연면적 합계 1,000㎡미만) ○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 종교집회장 ○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일 이전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함) ○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일 이전 제조업소로 사용 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제외) ○ 지하층의 주택용도 ○ 야적장, 고물상, 폐자원수집소 등 주거환경에 위대한 용도 ○ 「주택법」 상 도시형생활주택

※ 주 : 각 시설들에 대한 규모 및 세부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및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

■ 변경

구 분	권장용도	허용용도(A)	불허용도
중규모 5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다목 다가구주택은 5가구이하 - 별표1 제2호 나목 다세대주택(5세대이하), 다목 연립주택(동당 6세대 이하) -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단, 안마원 제외, 바닥면적 합계 1,000㎡미만) -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단, 연면적 합계 1,000㎡미만) -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 종교집회장 -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 나목 노인복지시설, 다목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일 이전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함) -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일 이전 제조업소로 사용 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제외) - 지하층의 주택용도 - 아적장, 고물상, 폐자원수집소 등 주거환경에 위대한 용도 「주택법」 상 도시형생활주택

※ 주 : 각 시설들에 대한 규모 및 세부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및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
2) 제1종 일반주거지역

■ 기정

구 분	권장용도	허용용도(B)	불허용도
대규모 77~79 중규모 45~50, 52~72 소규모 24~40, 4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다목 다가구주택은 3가구 이하 - 별표1 제2호 나목 다세대주택(3세대 이하), 다목 연립주택(6세대 이하) -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옥외골프연습장, 장의사, 총포판매사는 제외) -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 종교집회장 -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초·중·고), 박물관, 도서관 -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일 이전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함) -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 석유판매소 -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및 나목 세차장 - 별표1 제21호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중 사육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일 이전 제조업소로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제외) - 지하층의 주택용도 - 아적장, 고물상, 폐자원수집소 등 주거환경에 위대한 용도 「주택법」 상 도시형생활주택

※ 주 : 각 시설들에 대한 규모 및 세부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및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

■ 변경

구 분	권장용도	허용용도(B)	불허용도
대규모 77~79 중규모 45~50, 52~72 소규모 24~4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1호 가목 단독주택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다목 다가구주택은 5가구 이하 ○별표1 제2호 나목 다세대주택(5세대 이하), 다목 연립주택(동당 6세대 이하)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옥외골프연습장, 장의사, 종포판매사는 제외)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 종교집회장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초·중·고), 박물관, 도서관 ○별표1 제11호 노인·장애인시설 중 가목 아동·청소년시설, 나목 노인복지시설, 다목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일 이전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함)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 석유판매소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및 나목 세차장 ○별표1 제21호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중 사육·화조 및 분재 등의 온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일 이전 제조업소로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제외) ○지하층의 주택용도 ○아적장, 고물상, 폐자원수집소 등 주거환경에 위대한 용도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

※ 주 : 각 시설들에 대한 규모 및 세부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및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

6.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1) 전면공지, 대지내조경, 차량출입불허구간, 경 관에 관한사항

구 분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전면공지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통사항)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차량의 진·출입을 불허하기 위하여 블라드, 돌의자 등의 설치와 가로수 식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대로이상 도로변에 접한 토지의 경우 전면공지상에 방음식재 또는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단, 대로이상 도로변에서 진·출입이 허용된 구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보도부속형 - 보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한계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보도의 조성방법에 따라서 조성 ○차도부속형 -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한계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와 전면도로의 포장 및 조성방법에 따라서 조성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대지내 조경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통사항)	○ 자연환경이 양호한 주변과 조화로운 환경을 유지하고 전원적이고 쾌적한 주거지 조성을 위해 지정 <table><tr><th>구 분</th><th>대지내 조경면적</th></tr><tr><td>연면적 2,000㎡ 이상</td><td>대지면적의 20%이상</td></tr><tr><td>연면적 1,000㎡~2,000㎡미만</td><td>대지면적의 15%이상</td></tr><tr><td>연면적 1,000㎡미만</td><td>대지면적의 10%이상</td></tr></table> ○ 도로의 소음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계가 높은 도로에 우선하여 조경계획을 하여야 한다. ○ 대로이상 도로변에 접한 토지의 경우 전면공지상에 방음식재 또는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단, 대로에서 진·출입이 허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구 분	대지내 조경면적	연면적 2,000㎡ 이상	대지면적의 20%이상	연면적 1,000㎡~2,000㎡미만	대지면적의 15%이상	연면적 1,000㎡미만	대지면적의 10%이상	
구 분		대지내 조경면적									
연면적 2,000㎡ 이상		대지면적의 20%이상									
연면적 1,000㎡~2,000㎡미만		대지면적의 15%이상									
연면적 1,000㎡미만	대지면적의 10%이상										
차량출입 불허구간	○ 도시계획도로와 도시계획도로가 교차하는 모서리구간 및 모서리로부터 일정거리(5m)내에 출입제어 ○ 25m이상 간선도로에 직접 접한 토지의 출입제어 - 단,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땀지(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토지로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전까지 한시적 땀지적용, 지형단차에 의한 이면부 차량 출입불가 토지)이거나 의료시설, 주유소, 주차장 및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이 요구되는 시청, 경찰서, 소방서, 동사무소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용 ○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서 10m 이내 출입제어										
경관	○ 옥외광고물의 집단설치가 예상되는 지역 제어 -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고양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름 - 상기의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옥외광고물 표시기준 지침」을 따름										
친환경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에는 중수도 시스템 또는 우수 재활용을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을 권장 ○ 총 건축공사비의 1%이상 신재생에너지 시설비에 투자 또는 계획하여 총 에너지사용량의 1%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것을 권장										

2)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 내용

구 분	완화항목	완화조건	완화내용(%)	비 고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사항	획지분할/합병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공동개발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필지교환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보차혼용통로/ 보행자우선통로	대지내 공지제공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기준용적률의 10% 범위내
용도에 관한 사항	권장용도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건축연면적의 50%이상 수용시
경관에 관한 사항	경사지붕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담장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	우수재활용시설 설치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빗물저류탱크용량(Ton) 건축면적 × 0.05 또는 대지면적 × 0.02
	신재생에너지 사용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건축공사비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

※ 주 : 1)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용적률 완화적용의 합계

2) 각각의 대지에 적용되는 기준용적률의 완화는 완화조건이 인정되는 각 항목의 합으로 함

7.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변경

I. 민간부분 시행지침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 ①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내지 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의 민간부분에 적용하며 이의 시행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도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지역)

- ① 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적용지역은 다음과 같다.

1. 대규모 취락

도면번호	구 역 명	위 치	비 고
77	삼송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삼송동 27-1번지 일대	
78	동산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동산동 76-41번지 일대	
79	화전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화전동 563-21번지 일대	

2. 중규모 취락

도면번호	구 역 명	위 치	비 고
45	서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도내동 760-1번지 일대	
46	셋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도내동 589-5번지 일대	
47	밭말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산동구 산향동 612-1번지 일대	
48	신평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신평동 3-184번지 일대	
49	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산동구 식사동 503-1번지 일대	
50	제청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원당동 434-5번지 일대	
51	효자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효자동 169-1번지 일대	
52	청대골섬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원당동 632-1번지 일대	
53	두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관산동 471-1번지 일대	
54	백신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산동구 백석동 1120-30번지 일대	
55	베라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성사동 191-1번지 일대	
56	난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현천동 393-1번지 일대	
57	양지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현천동 160-5번지 일대	
58	가무네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현천동 128번지 일대	
59	삼성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토당동 647-4번지 일대	
61	상중대장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장동 206번지 일대	
62	대덕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덕은동 131-4번지 일대	
64	소애촌서원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행주외동 195-4번지 일대	
65	뫼지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자동 355-10번지 일대	
66	매화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강매동 97-1번지 일대	
67	위아래독곶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주교동 1108번지 일대	
68	갈머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장동 253-4번지 일대	
69	안골뽕꾸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내곡동 68-1번지 일대	
70	새마을성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행주내동 156-4번지 일대	
71	맨돌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행주내동 497번지 일대	
72	웃말아랫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용두동 347-2번지 일대	

3. 소규모 취락

도면번호	구 역 명	위 치	비 고
24	응달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벽제동 219-7번지 일대	
25	빈정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자동 486-3번지 일대	
26	사리현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산동구 사리현동 32-6번지 일대	
27	월현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산동구 사리현동 40번지 일대	
28	늘봄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자동 69-12번지 일대	
29	용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자동 134-5번지 일대	
30	한오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자동 283-5번지 일대	
31	안터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신원동 261-4번지 일대	
32	새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자동 205-27번지 일대	
33	큰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오금동 227-6번지 일대	
34	영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산동구 식사동 549-4번지 일대	
35	박재궁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주교동 443-4번지 일대	
36	수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성사동 598번지 일대	
37	장터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주교동 216-3번지 일대	
38	덤불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성사동 29번지 일대	
39	윗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원흥동 446-1번지 일대	
40	유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원흥동 377-9번지 일대	
41	중고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지축동 403-3번지 일대	
42	절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지축동 167-13번지 일대	
43	건너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용두동 178번지 일대	

제3조(시행지침 적용의 기본원칙)

- ① 시행지침의 적용은 지구단위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시 적용한다.
 1. 건축물 및 공작물(「건축법」상 가설건축물 포함)의 신축시
 2. 해당부분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이전·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 ② 이 지침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및 조례에 따른다.
- ③ 시행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별된다. 이중 “규제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며, “권장사항”은 권장에 따를 것을 권하여 장려하는 경우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킬 것을 권장하는 사항이며 경우에 따라 지침에 정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 ④ 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서로 상이 할 경우 법규의 범위안에서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 ⑤ 대지 상호간 분할·합병 또는 공동개발의 해제·조정 등에 의해 대지에 서로 상이한 지침이 적용될 경우 그 규제내용은 강화된 지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⑥ 본 지침과 지구단위계획결정도간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⑦ 지침과 지구단위계획결정도는 그 지침이 추구하는 계획목표나 방향을 가시화하는 것으로 지침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⑧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개정·제정 또는 변경될 경우에는 개정·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따른다.

제4조(용어의 정의)

-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허용용도”라 함은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용도를 말한다.

3. “불허용도”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4. “권장용도”라 함은 대상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용도로 선정된 용도를 말한다.
 5. “공동개발”이라 함은 인접한 2 이상의 대지를 일단의 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6. “필지교환”이라 함은 토지소유자간 필지의 정형화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지의 일부를 인접 필지와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7.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8.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지 못하게 하는 선을 말한다.
 9. “전면공지”라 함은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획지내 공지를 말한다.
 10. “차량출입불허구간”이라 함은 대지 안으로 차량출입이 금지되는 구간을 말한다.
 11. “기준용적률”이라 함은 전면도로 폭, 경관, 기타 개발억제 필요성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도시개발 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12. “상한용적률”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권장하는 사항을 준수시에 인센티브로서 추가 제공되는 용적률을 기준 용적률에 합산한 용적률을 포함한 용적률로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최대 달성할 수 있는 총용적률을 말한다.
 13. “보차혼용통로”라 함은 대지안의 보행자 및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되어있는 통로를 말한다.
 14. “보행자우선통로”라 함은 대지내에 24시간 개방된 공지로서 차량보다는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하게 제공된 통로를 말한다.
 1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차량을 제한하고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성된 도로를 말한다.
 16. “보행자우선도로”라 함은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성된 도로를 말한다.
 17. “대지분할가능선”이라 함은 개발촉진과 조화로운 개발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필지나 부정형필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분할가능 위치를 권장하는 선을 말한다.
 18. “블록형 주택용지”라 함은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또는 보차혼용통로로 구축되는 일단의 블록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시행하는 주택사업용지를 말한다.
- ②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는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2편 대지에 관한 사항

제5조(단위대지 : 권장사항)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대지를 단위로 건축하여야 한다.
 1. 공동개발이 지정되지 않은 기존의 필지
 2. 공동개발이 가능한 일단의 토지

제6조(대지의 최소개발규모 : 규제사항)

- ① 지구단위계획결정도상 제시되지 않은 필지분할시 최소규모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단,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상 주택호수 산정기준에 적합한 토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개발사업계획에 의한 개발계획을 관계법에 의거 결정·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당해 결정·승인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면적기준	비 고
최소개발규모	60㎡	

제7조(대지의 최대개발규모 : 규제사항)

- ① 대지를 기준으로 단위개발시 인접필지와의 공동개발 및 분할·합병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단,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상 주택호수 산정기준에 적합한 토지로서 기존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와 블록형 주택용지로 개발하는 사업지는 예외로 하되 기존 대지규모 이상으로의 변경은 불가한다.

구 분		면적기준	비 고
최대개발 규모	주거용 용지	1,000㎡	
	블럭형 주택용지	제한사항 없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사업지에 한함
	비주거용 용지	2,000㎡	건축물 전체용도가 비주거용도인 경우에 한함

② 개발사업계획에 의한 개발계획을 관계법에 의거 결정·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당해 결정·승인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공동개발 : 규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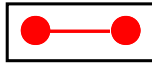
① 공동개발(규제)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규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구단위계획 작성자가 공동개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60㎡ 이하의 필지중 인접필지와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2. 도시계획시설설치로 인하여 생기는 잔여지 중 인접필지와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3. 건축선 후퇴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필지중 인접필지와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② 공동개발(규제)이 표시된 필지의 건축물은 인접 필지와 공동으로 건축해야 한다.

③ 도면표시

공동개발(규제)



제9조(공동개발 : 권장사항)

① 공동개발(권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권장’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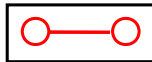
1. 제8조 ① 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인접필지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2. 건축물 대장상 공유토지로서 등재된 토지인 경우
3. 기형적 건축이 예상되는 부정형 필지, 세장비가 큰 필지 또는 삼각형 필지로 필지 여건상 단독개발이 불가능한 부정형 필지
4. 필지의 면적이 그 입지 위치에 따른 개발잠재력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규모에 미달할 경우

② 공동개발(권장)이 표시된 필지의 건축물은 인접 필지와 공동으로 건축할 것을 권장하나, 3이상의 필지와 공동개발이 표시된 필지 중 전체적인 공동개발이 안되고 2이상의 필지간 공동개발이 되는 경우에도 공동개발 권장사항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③ 공동개발이 지정되지 않은 필지라도 해당 필지의 소유자가 공동개발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동개발하도록 권장하며, 공동개발에 따른 인센티브(용적률 완화)를 부여한다.

④ 도면표시

공동개발(권장)



제10조(대지의 분할 및 합병 : 권장사항)

① 지구단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대필지(1,000㎡초과) 내지는 부정형 필지, 도로의 폐쇄에 대한 분할 및 합병을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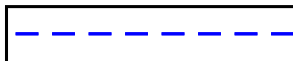
② 필지의 분할이 가능한 필지규모는 600㎡이상의 필지로 한다.

③ 삭제

③ 필지의 분할은 취락내 토지의 부정형에 따른 고른 규모의 획지계획은 한계가 있어 인위적 계획은 지양하며 지침도에 표시하지 아니한다. 단, 오거리취락의 경우 필지의 분할은 ‘대지분할가능선’을 따라서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지분할가능선’의 이동을 허용한다.

④ 지구단위계획에서 대지의 분할 및 합병이 권장되어 있지 않은 필지라도 토지소유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필지의 분할 및 합병이 가능하다. 단 필지의 분할 및 합병시 모든 필지에 차량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개발(권장)



제11조(필지교환 : 권장사항)

- ① 필지교환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나, 토지소유자간 필지의 정형화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지의 일부를 인접 필지와 교환할 경우 이를 적극 권장한다.

제3편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

제12조(허용용도 : 규제사항)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에서 제한하는 건축물 및 시설 등은 입지할 수 없으며, 허용하는 건축물 용도일지라도 본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불허용도는 입지할 수 없다.
- ② 허용용도가 표시된 대지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라 다음 용도표에 열거된 건축물 허용용도를 건축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 및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및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를 따른다.
- ③ 삭제
- ③ 도면표시

허용용도 (규제)		A/B	(A 또는 B 용도 허용)

□ 제1종전용주거지역(A)

구 분	권장용도	허용용도(A)	불허용도
중규모 5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다목 다가구주택은 5가구이하 ○ 별표1 제2호 나목 다세대주택(5세대이하), 다목 연립주택(동당 6세대 이하) ○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단, 안마원 제외, 바닥면적 합계 1,000㎡미만) ○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단, 연면적 합계 1,000㎡미만) ○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 종교집회장 ○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 나목 노인복지시설, 다목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일 이전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함) ○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일 이전 제조업소로 사용 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제외) ○ 지하층의 주택용도 ○ 야적장, 고물상, 폐자원수집소 등 주거환경에 위대한 용도 ○ 「주택법」 상 도시형생활주택

□ 제1종일반주거지역(B)

구 분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대규모 77~79 중규모 45~50, 52~72 소규모 24~4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다목 다가구주택은 5가구 이하 ○ 별표1 제2호 나목 다세대주택(5세대 이하), 다목 연립주택(동당 6세대 이하) ○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옥외골프연습장, 장의사, 총포판매하는 제외) ○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 종교집회장 ○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초·중·고), 바목 도서관 ○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 나목 노인복지시설, 다목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일 이전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함) ○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 석유판매소 ○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및 나목 세차장 ○ 별표1 제21호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중 사목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일 이전 제조업소로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제외) ○ 지하층의 주택용도 ○ 야적장, 고물상, 폐자원수집소 등 주거환경에 위대한 용도 ○ 「주택법」 상 도시형생활주택

- ④ 권장용도 준수에 따른 보상(용적율인센티브)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은 당해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한 권장용도 범위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제4편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제13조(건폐율)

- ① 건폐율은 다음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구 분	건 폐 율	비 고
제1종전용주거지역	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② 도면표시방법 : 건축물의 건폐율은 아래표시 그림의 좌측하단에 명기한다.

예 :

60	

 → 건축물의 건폐율

제14조(용적률)

- ① 용적률은 다음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구 분		용 적 률	비 고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 %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대규모 취락	기준 : 150 % 이하 상한 : 180 % 이하	
	중/소규모 취락	기준 : 140 % 이하 상한 : 170 % 이하	

- ② 도면표시방법 : 건축물의 용적률은 아래표시 그림의 좌측상단에 명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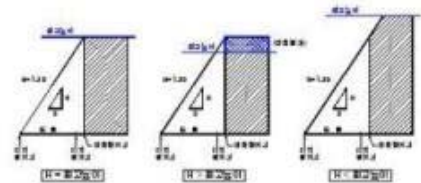
예 :

150	
180	

 → 건축물의 용적률

제15조(건축물의 높이)

- ①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의하여 건축물높이가 지정된 대지에서는 지정된 높이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②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법 제51조 3항에 의한 사선제한을 적용하되,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최고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구 분	최 고 높 이 계 획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층 이하(1층 부분에 피로티를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4층까지 허용) ※ 노외 주차장내 주차전용 건축물 입지시 3층이하

- ③ 도면표시방법 : 건축물의 높이규제는 층수 및 높이로 규제하며, 아래표시 그림의 우측하단에 명기한다.

예 :

	3층

 →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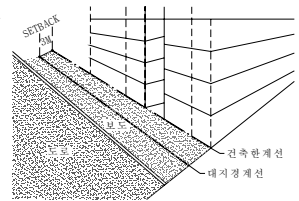
제5편 건축물의 배치·형태에 관한 사항

제16조(건축한계선의 적용 : 규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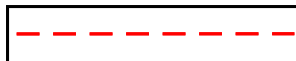
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 건축물 벽면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선을 말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대규모 취락	8m이하 도로변	경계선으로부터 1.5m	
	8m초과 도로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중/소규모 취락	6m이하 도로변	경계선으로부터 1.5m	
	6m초과 도로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기타 (공원 인접지 등)		지구단위계획결정도상에 표시된 폭원 적용	삭제

- ②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차량의 진·출입을 불허하기 위하여 블라드, 돌의자 등의 설치와 가로수 식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하는 보행 및 차량을 위한 통로와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④ 도시계획도로에 적용되는 건축한계선은 도로의 중심선 및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양측으로 동일하게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 및 대지의 지적경계선이 과도하게 불규칙하여 통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결정도상 계획되어진 건축한계선의 선형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건축한계선의 폭원을 적용할 수 있다.
- ⑤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상의 폭원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되지 않은 대지라도 건축법 및 관련지침을 따라야한다.
- ⑥ 도면표시



건축한계선(규제)



제17조(건축물의 형태)

- ① 건축물의 형태는 자연친화적이고 지역여건에 맞는 형태로 하고 재료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② 중고개, 절골취락의 경우 옹벽설치에 따른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형순응형 건축물을 배치를 권장 한다
- ③ 『건축법』 및 『고양시건축조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표> 구릉지 지형순응형 건축물 배치 예시



제6편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제18조(전면공지의 조성방식 : 규제사항)

- ①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보도 및 차도와 접하는 대지경계선에서 일정 길이 이상을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대지내 공지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지경계선과 건축선 사이의 공지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성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차량의 진·출입을 불허하기 위하여 블라드, 돌의자 등의 설치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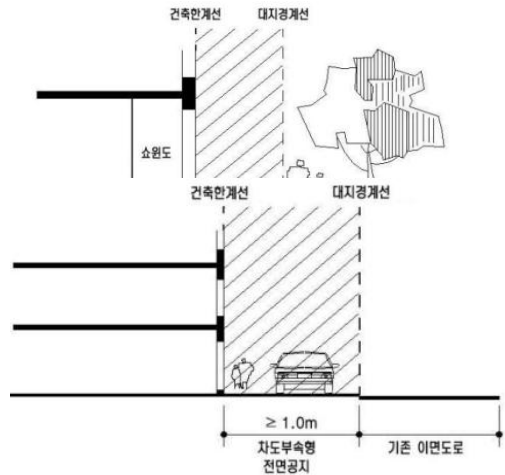
로수 식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대로이상 도로변에 접한 토지의 경우 전면공지상에 방음식재 또는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단, 대로이상 도로변에서 진출입이 허용된 구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③ 전면공지(보도부속형)

보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한계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보도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전면공지(차도부속형)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한계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와 전면도로의 포장 및 조성방법에 따라서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기타사항

1. 단처리 :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대지 내 공지는 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차이가 없어야 한다.
2. 포장 : 포장패턴 조성시 공공부분의 보도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포장 선정시 인접지역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하고 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일체의 통행방해물을 설치할 수 없다.
3. 보도와 전면공지(보도부속형) 경계부 처리 :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한계선에 의해 조성되는 공지와 보도와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블라드, 돌의자 등을 설치한다. 단,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설치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4. 적용의 예외 : 지구단위계획상 보도의 확장 외의 목적으로 지정된 대지내 공지는 위의 단처리와 포장에 대한 지침을 따르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며,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처리도 예외로 한다.

제19조(보차혼용통로 : 규제사항)

- ① 보차혼용통로는 건축한계선을 통하여 확보하며, 건축법상 제4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및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적용한다.
- ② 보차혼용통로는 보행 또는 차량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확보한다.
 1. 통로에 접하는 보도 혹은 도로와 단차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인접 대지간 단차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2. 통로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3. 통로로 연결되는 양측도로의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③ 보차혼용통로는 본 지구단위계획 공공부분 관련조항 기준에 적합한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하며, 대지내 통로의 포장은 공공부분 시행지침 포장기준에 의한 조성방식을 따른다.
- ④ 다음 각호의 경우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관계기관협의 및 심의없이 변경(폐지포함)할 수 있으며, 보차혼용통로의 변경시 이에 따른 건축한계선도 동시에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단,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자력개발 및 공동개발 등을 통해 블록내부의 땀지가 해소될 경우
 2. 땀지해소를 위한 다른 대체통로의 확보 등 대안이 있을 경우
- ⑤ 보차혼용통로 조성시 대지 분할 및 지목변경을 권장하며, 이 경우 획지 분할에 대한 완화항목과 보차혼용통로 제공에 따른 완화항목 양쪽의 인센티브를 동시에 적용 받고, 밀도(건폐율, 용적률) 산정시 보차혼용통로로 제공한 면적을 대지면적에 포함한다.

⑥ 보차혼용통로의 조성은 각각의 건축이 행해지는 시점에 민간(건축주)이 조성한다.

⑦ 도면표시

보차혼용통로(규제)



< 표 > 보차혼용통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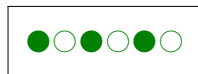
구 분	보차혼용통로 폐지	보차혼용통로 위치변경	사도 개설
유형예시			
특 성	공동개발을 통해 블록내부의 땀지 해소	보차혼용통로 및 그에 따른 건축한계선의 위치 변경	사도개설을 하더라도 기존 보차혼용통로의 기능유지가 필요한 경우 보차혼용통로 유지

제20조(보행자우선통로 : 규제사항)

- 보행자우선통로는 건축한계선을 통하여 확보하며, 건축법상 제4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및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적용한다.
- 보행자우선통로는 보행 또는 차량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상기 제19조 ②항 각호에 적합하게 확보한다.
- 보행자우선통로로 확보된 공지는 내구성있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기준은 공공부문의 “보행자우선통로” 조성방식을 준용한다.
- 다음 각호의 경우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관계기관협의 및 심의없이 변경(폐지포함)할 수 있으며, 보행자우선통로의 변경시 이에 따른 건축한계선도 동시에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단,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주민의 자력개발 및 공동개발 등을 통해 블록내부의 땀지가 해소될 경우
 - 땀지해소를 위한 다른 대체통로의 확보 등 대안이 있을 경우
- 보행자우선통로 조성시 대지 분할 및 지목변경을 권장하며, 이 경우 획지 분할에 대한 완화항목과 보행자우선통로 제공에 따른 완화항목 양쪽의 인센티브를 동시에 적용하고, 밀도(건폐율, 용적률) 산정시 보행자우선통로로 제공한 면적을 대지면적에 포함한다.
- 보행자우선통로의 조성은 각각의 건축이 행해지는 시점에 민간(건축주)이 조성한다.

⑦ 도면표시

보행자우선통로(규제)



제21조(대지내 조경에 관한 사항 : 규제사항)

- 자연환경이 양호한 주변과 조화로운 환경을 유지하고 전원적이고 쾌적한 주거지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한 대지내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 분	대지내 조경면적	비 고
연면적 2,000㎡ 이상	대지면적의 20%이상	
연면적 1,000㎡~2,000㎡미만	대지면적의 15%이상	
연면적 1,000㎡미만	대지면적의 10%이상	

- 도로의 소음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계가 높은 도로에 우선하여 조경계획을 하여야 한다.
- 대토이상 도로변에 접한 토지의 경우 전면공지상에 방음식재 또는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단, 대토이상 도로변에서 진출입이 허용된 구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22조(담장의 설치 : 권장사항)

- ① 6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구간의 대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가능한 한 미설치, 식재담장(생울타리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를 권장한다.
- ② 담장 설치시 담장의 높이는 1.2m이하로 권장한다.

< 표 > 담장, 생울타리, 대문예시

구 분	담 장	생 울 타 리	대 문
유형예시			
특 성	◦ 개방된 가로공간 조성 ◦ open 공간으로서 가로의 밀폐감 감소	◦ 지역 생태환경에 기여	◦ 개방된 가로공간 조성 ◦ 가로의 안전성 제고

제7편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사항

제23조(차량출입불허구간의 적용 : 규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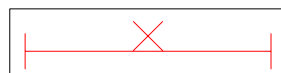
- ① 다음 사항의 경우 차량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적 용 대 상	비 고
◦ 원칙적으로 도시계획도로와 도시계획도로가 교차하는 모서리 구간 및 모서리로부터 일정거리(5m이상)내에서 출입제어	
◦ 25m이상 간선도로에 직접 접한 토지의 출입제어 - 단,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맹지(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토지로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전까지 한시적 맹지적용, 지형단차에 의한 이면부 차량 출입불가 토지)이거나 의료시설, 주유소, 주차장 및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이 요구되는 시청, 경찰서, 소방서, 동사무소 등의 경우 예외적용	
◦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서 10m이내	

- ② 필지의 분할 등 대지여건의 인위적 변경으로 부득이하게 차량출입불허구간에서 차량의 출입이 허용되어야 할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도면표시

차량출입불허구간



제24조(차량출입구의 설치 : 규제사항)

- ①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주차출입구만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단, 다음의 경우 차량의 대지내 진입동선과 진출동선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최대 2개소까지 주차출입구를 허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2. 주유소
 3. 주차장
 4. 병원

- ③ 25m이상 도로에 진출입구 설치시 공동진출입로 설치가 가능한 경우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하여 공동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함

제25조(주차장설치 : 규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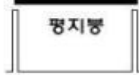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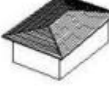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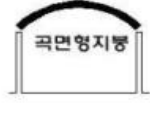
- ① 지구단위계획내 주차장(민간이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포함)설치는 주차장법과 고양시 주차장 조례를 따르되 주차건축물은 법과 조례에 불구하고 3층이하로 규제한다.

제8편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

제26조(건축물의 외장 및 지붕처리 : 권장사항)

- ①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중고개 절골취락의 경우 자연친화적 소재(벽돌, 흙, 나무 등)를 권장 한다).
- ② 건축물 외벽의 색채기조는 인접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품격있는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한다.
- ③ 지구단위계획내 건축물은 경관향상을 위하여 경사지붕(평지붕인 경우 옥상녹화)으로 처리할 것을 권장한다.
- ④ 『건축법』 및 『고양시건축조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표 > 지붕형태 예시

 평지붕	 (1)평지붕
 경사지붕	 (2)박공지붕  (3)모임지붕  (4)외쪽지붕  (5)꺾인박공지붕  (6)반박공지붕  (7)압각지붕  (8)숏슬지붕  (9)꺾인모임지붕  (10)덱크지붕  (11)부설지붕  (12)나비형지붕  (13)사모지붕
 곡면형지붕	 (14)구형(돔형)지붕  (15)원통형지붕

제27조(옥외광고물 : 규제사항)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옥외 광고물의 설치에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따른다.
- ② 상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지침」을 따른다.

제28조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 ① 중수도 시스템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에는 중수도 시스템 또는 우수 재활용을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당해 대지 및 건축물에 중수도 및 우수재활용 설비를 조성하여 용적률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중수도 설치의무 대상인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를 부여하지 않음) 관련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인허가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그 적용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 ② 빗물저수조
- 빗물저수조 설치를 위한 예시도는 다음과 같다.

□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내용(인센티브 기준)

구 분	완화항목	완화조건	완화내용(%)	비고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사항	획지분할/합병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공동개발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필지교환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보차혼용통로/보행자우선통로	대지내 공지 제공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기준용적률의 10% 범위내
용도에 관한 사항	권장용도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건축연면적의 50%이상 수용시
경관에 관한 사항	경사지붕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담장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	우수재활용시설 설치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신규 빗물저류탱크용량(Ton) 건축면적 × 0.05 또는 대지면적 × 0.02
	신생에너지 사용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건축공사비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

※ 주 : 1.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용적률 완화적용의 합계
2. 각각의 대지에 적용되는 기준용적률의 완화는 완화조건이 인정되는 각 항목의 합으로 함

제33조(심의 도서)

- ①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의 건축물로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심의도서 외에 다음과 같은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외부 공간 처리에 대하여 축척 1/100 이상의 도면과 중요 부분에 대하여는 축척 1/30 이상의 지구단위 도면
 2. 인접한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건물이 포함된 배치도와 기존 건물(주변 좌우 각 3개이상의 건물 포함)과 신축건물의 입면이 같이 도시된 정면·입면도 또는 현황사진
 3. 전면공지의 포장 도면은 공공 공지, 전면 보도, 좌우 연접 전면공지 등의 포장 패턴이 함께 표시된 도면
 4.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시 기존 건축물 현황 및 배치도
 5.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외벽, 담장, 색상 마감재료 등)
 6. 지구단위계획 지침 반영여부 및 필요한 경우 관련부분 상세한 계획도

제34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 ①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3항 내지 4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건축위원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가 변경할 수 있다.
- ②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다음과 같다.
1. 보차혼용통로의 위치변경 및 이에 따른 건축한계선의 위치 변경 (시행지침 제19조 ④의 경우에 한함)
 2. 보행자우선통로의 위치변경 및 이에 따른 건축한계선의 위치 변경 (시행지침 제20조 ④의 경우에 한함)

II. 공공부분 시행지침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및 정의)

- ① 본 공공부분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은 “대규모 3개, 중규모 26개, 소규모 20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공공부분에 적용하며, 이의 시행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도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공공부분”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하여 도로 시설물, 녹지, 주차장, 공공이용시설, 옥외 가로시설물, 포장, 조명, 도시안내체계등 공공(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조성되는 공간이나 시설로서 공중의 일반적 이용에 개방되는 부분을 말한다.

제2조(지침 적용의 기본원칙)

- ①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조례, 지침 등에 따른다.
- ② 시행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현행법규의 허용범위에서 동 시행지침의 내용을 따른다.
- ③ 단, 시행지침상 규정된 사항이라도 향후 관련법규의 개정에 의거하여 보다 개선된 공공부분계획, 설계내용이 수립되어 동 계획을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 시행지침을 융통성있게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본 지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민간부분 시행지침 제4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2편 시설별 시행지침

제1절 일반도로

제4조(적용범위)

- ① 본 지침은 도시계획시설중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도로법, 도로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해설 및 지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제5조(일반도로)

- ① 동선체계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세가로 접속체계를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간선가로에 접속되는 곳에 차량출입을 불허하거나 일방통행을 실시한다.
- ② 도로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건축선 후퇴 부분은 공공을 위한 공간인 차도 및 보도로 조성하되 기설치된 보차도와 일체로 조성한다.
- ③ 차도와 보도 사이의 경계부는 식수대, 가로장치물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완충공간으로 확보한다.
- ④ 일반도로의 횡단구성은 다음의 폭원별 예시도를 준용한다.

6m		6m 예외영향	
8m 편측 보도		8m 보도 미조성	
10m		12m	
15m		20m	
25m			
30m			
35m			
40m			

제6조(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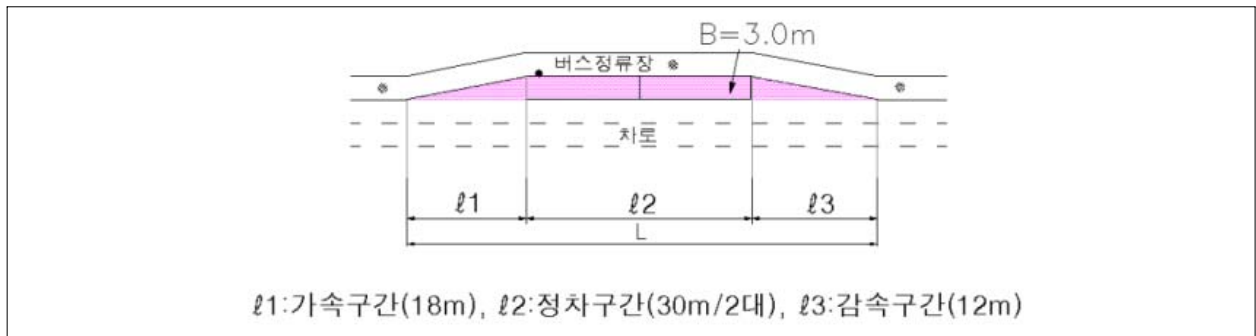
- ①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폭원10m이상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한다. 단,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 경우는 예외를 적용한다.
- ② 보도의 폭원은 최소1.5m이상으로 설치한다.
- ③ 보도는 연석(경계석) 등을 설치하여 차도로부터 분리한다.

제7조(버스정차대)

- ① 버스정차대는 버스중앙차로제구간을 제외하고는 포켓형을 원칙으로 설치한다.
- ② 버스정차대는 교차로, 횡단보도, 6m이하의 국지도로로부터 다음표와 같이 일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토록 한다.

구 분	전방		후방	
	최소	적정	최소	적정
교차로	60m	100m	30m	60m
횡단보도, 6m이하 국지도로	30m	30m	30m	30m

- ③ 포켓형 버스정차대의 정차폭원은 2.5m이상, 정차대길이는 가속구간, 감속구간, 정차구간으로 하는 기본구조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제8조(중앙분리대)

- ① 폭원 25m(4차선)이상인 도로에 설치할 수 있다.
- ② 중앙분리대폭원은 1.5m이상, 분리대길이는 30m이상으로 설치한다.
- ③ 교차로 부근에서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고 좌회전 또는 유(U)턴할 수 있는 회전차로로 전용할 수 있다.
- ④ 중앙분리대에 식재하는 경우에는 관목과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하되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 부분적 강조, 혹은 시각적인 분절이 필요한 지점에는 교목을 식재할 수 있다.

제9조(신호등)

- ① 교차로에서 평일의 교통량이 다음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이 8시간이상일 경우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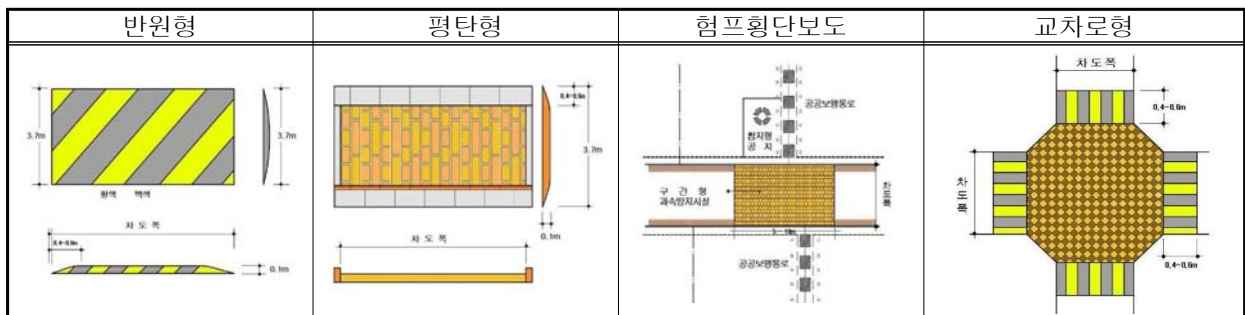
구 분		교통량기준	
교차로		주도로 교통량(양방향) : 600대/시간	부도로 교통량(많은 방향) : 200대/시간
횡단보도	일반도로	주도로 교통량(양방향) : 900대/피크시간	횡단보행자 : 150명/시간
	통학로	주도로 교통량(양방향) : 900대/통학시간	학교앞 300m이내 횡단보도

- ② 신호등을 설치기준은 도로교통법령에 의한다.
- ③ 신호등 설치간격은 간선도로의 경우 400~500m, 집산도로의 경우는 200~300m를 기준으로 하되 최소100m이상은 되어야 한다.

제10조(과속방지 시설)

- ① 설치간격은 차량이 일정한 통행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50m의 범위내에서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 ② 교차로부근 등 차량의 주행속도가 자연히 감소될 수 있는 구간에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다.
- ③ 설치위치는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통행속도를 시속 30km/h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보행자우선도로 구간에 설치한다.
- ④ 보행자우선도로 진입부에 과속방지시설인 요철포장을 설치하여 진입차량의 속도를 감소시켜 보행자 보호를 도모한다.
- ⑤ 과속방지시설의 설치시 차량 진출입구로부터 일정거리($D = 20\text{m}$ 내외)내에는 진출입차량의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설치를 배제한다.
- ⑥ 운전자와 원거리에서도 인식이 가능하도록 밝은색으로 요철포장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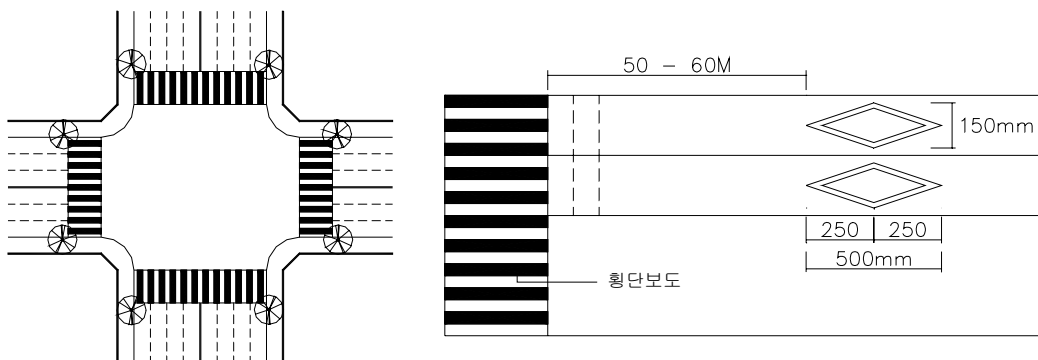
■ 과속방지턱의 예시도



제11조(횡단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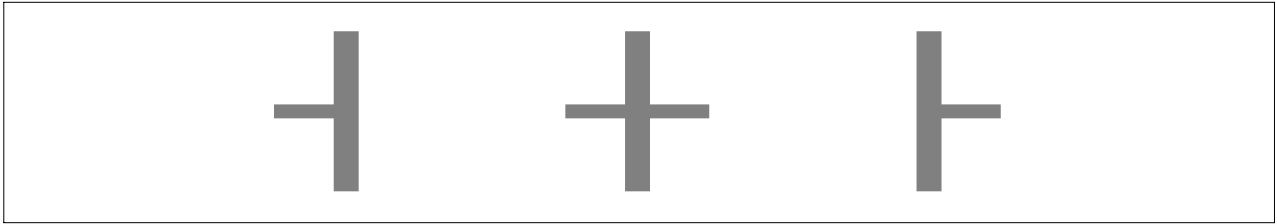
- ① 일반적 설치 간격은 100m이하로 계획하고 교차로상 보행동선의 길이를 최소화 하기위해 가각 위치에 최대한 근접시켜 최단거리가 되도록 설치한다.
- ② 장애자를 위해 경계석 턱을 낮추고 벨신호기나 횡단보도로 유도하는 점자형보도블럭을 설치한다.
- ③ 차도와 횡단보도 경계부분에 불법 차량진입방지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에도 식별가능한 블라드 겹 조명등을 설치한다.
- ④ 차량운전자에게 횡단보도를 주의시키기 위해 횡단보도 양쪽에 수목을 배치하여 차도폭을 시각적으로 좁게 한다.
- ⑤ 보행자전용도로에는 따로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고 전구간에 걸쳐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게 하여 보행자 전용도로의 기능을 최적화한다.

■ 횡단보도 설치 예시도



제12조(교차로마크)

- ① 주거지내 국지도로 등의 교차지점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에 교차지점의 존재 및 형태를 나타내는 교차로 마크를 설치한다.
- ② 교차로마크는 인지도가 높은 색상을 사용한다.



제2절 포장

제13조(차도부분 포장)

- ① 차도부분에는 기본적으로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을 사용하되, 차량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교차, 접속구간에는 투수콘, 차도용 소형고압블럭 등을 도입하여 장소성을 제공한다.

제14조(보도부분포장)

- ① 보도부분포장은 인접주거단지의 구조색과 부합되어야 하며, 가로수 식재간격, 조명등 배치간격 등을 근거로 한 패턴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차로부 포장에서는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턱이 없는 경계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 ① 민간-공공 등 타부분의 공사 시행으로 인한 포장훼손시 공사 완료후 필히 당초대로 원상복귀를 원칙으로 한다.
- ② 공사완료후 공사시행자는 일체의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귀 했음을 해당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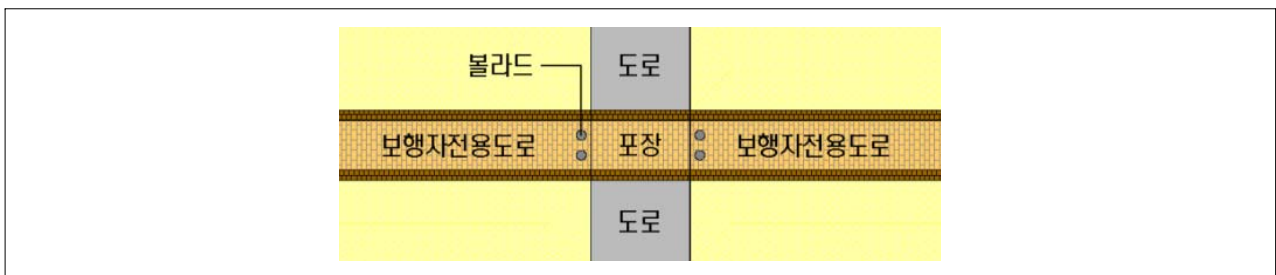
제3절 보행자전용도로

제16조(포장)

- ① 소형고압블럭, 투수콘, 컬러아스콘 등을 사용하며 연계되는 보도와는 연속성과 일체감을, 차도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색상, 문양사용 등을 함께 설치하여 보행자로 하여금 보행환경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수 있도록 한다.

제17조(교차지점의 처리)

- ① 보행자전용도로와 차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는 차량과 보행간의 마찰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볼라드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다.
- ② 교차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는 보행의 연속성제고를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와 동일한 재료, 색상사용 및 과속방지턱(hump)겸용으로 설치한다.



제4절 보행자우선도로

제18조(포장)

- ① 소형고압블럭, 투수콘, 컬러아스콘 등을 사용한다.
- ② 차량속도제한을 위하여 도로진출입부에 차로폭좁힘 또는 럼블스트립, 럼블에어리어, 지글바 등 요철포장의 특수 포장방식을 함께 사용한다.
- ③ 차로폭좁힘부분에는 비상시 긴급차량의 통행이 가능토록 신축성 및 충격흡수가 가능한 재료로 설치하며 야간의 인지성을 확보한다.

제19조(차량속도제한 등)

- ① 보행자우선도로에서의 차량속도를 즉시정지가 가능한 서행 등의 제한적 통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고속도 (30km/h이하)규제, 일방통행규제 등을 한다.

제5절 도시안내 표지시설

제20조(적용범위)

- ① 도시안내표지시설은 보행안내시설과 차량안내시설로 나누어 지침을 작성한다.
- ② 본 지침은 도로, 광장, 공공공지 등에 설치되는 가로정보체계에 관한 것으로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는 사항은 도로법, 도로표지규칙, 도로교통법, 교통안전시설 관리편람 (경찰청),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편람(건설교통부)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제21조(보행안내체계 조성방식)

- ① 기능과 형태가 유사한 시설을 통합설계하여 이용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가급적 보행결절부와 주요시설물 진입부에 집단배치하여 가로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한다.
- ② 정보위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표기하여 동질성과 조화를 갖게하여 효율적 안내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다른 가로장치물과의 일괄설계 및 통합배치를 통한 형태적 통일성을 기하여 효과적인 정보전달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안내표지판의 높이, 크기, 형태, 색채, 재질 등 식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행 및 보행속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 배치하여야 한다.
- ⑤ 안내표지판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유사형태의 안내표지판을 통일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안내판의 크기는 단계를 두어 신축성 있게 규격화하여야 한다.
- ⑥ 식별성과 지역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고양시 독자적인 심볼, 로고 등 그래픽요소를 개발, 활용하여야 한다.

제22조(보행안내체계 설치위치)

- ① 보행 결절점이나 교통 결절점에 종합안내시설을 배치하여 구역전체에 대한 정보와 안내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안내판으로 계획하여 지구별 전체의 주요도로 및 시설, 대중교통수단 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수록한다.
- ② 보행자도로와 대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구역안내판을 설치하여 도보권내에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 연속적인 안내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시설물 주변의 결절점 및 교차점에 방향안내판을 설치한다.
- ④ 버스정류장에 설치되는 안내판은 전체 버스노선과 인접주요시설의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⑤ 시설안내 표지판의 난립으로 인한 식별성 및 경관불량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표지 규칙에 의거 규격, 표기방법 등을 통일하여 동일성격의 표지판을 한곳에 집중 설치토록 한다.

제23조(보행자 안내시설)

- ① 보행자전용도로 주요진입부간에 안내표지판 또는 1m 높이의 안내기둥 형태의 안내 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우선도로의 위치를 명확히 전달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차량의 접근을 최소화 한다.
- ② 보행자전용도로 안내기둥 시설은 기타시설물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장식적이고 조형적인 형태를 지님으로써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설계·배치한다.

제24조(차량안내 체계 조성방식)

- ① 표지판에 표기될 안내지명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지명도가 높은 것으로 설정한다.
- ② 명명체계는 명명단위 우선순위를 지역명 - 시설명 - 도로명 - 구역명 순으로 교차로 위계별로 단계적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③ 지구내 일방통행체계 구축에 대비하여 일방통행로 진입부에 색채·조형 등을 고려한 차량안내기둥을 설치한다.

제25조(교통안내표지판 설치방식)

- ① 교통안내표지판의 배치간격은 표지판의 인지도가 좋고 긴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동작 시간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교차로와 교통량 집중지역에는 배치간격을 줄이도록 한다.
- ② 규제·지시표지는 규제와 지시가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에 각각 설치하고 주의표지는 위험구역 입구나 혹은 위험 지점 이전에 안내표지는 교차로 및 교차로 전방에 배치한다.

- ③ 교통안내표지판 설치에 장애를 주는 도로의 부속시설은 그 위치와 규모, 진출입상태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상충되지 않도록 한다.

제26조(도로표지판 설치방식)

- ① 도로표지판의 설치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으로 하되 도로의 형태에 따라 10도 이내의 안쪽에 설치하며 시각적으로 장애를 주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 ② 운전자가 다음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에서 읽을 수 있도록 배치한다.
- ③ 방향표지판은 원거리와 근거리의 2개 지명을 표기하고 기존 교통안전시설물을 이용 하거나 부착사용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제6절 가로식재

제27조(가로수 수종선택)

- ① 가로로 특성 및 가로환경 조건에 부합하는 수종을 선정한다.
- ② 계절성이 풍부하여 토양, 기후 등 생태적 조건이 적합한 향토수종을 선정한다.
- ③ 이식이 용이하고 생장속도가 빠르고 전정에 잘 견디며, 병충해에 강한 관리가 편리한 수종을 선정한다.
- ④ 꽃가루 등에 의해 인체에 알러지 질환 등의 피해를 유발하는 수종은 배제한다.

제28조(가로수 식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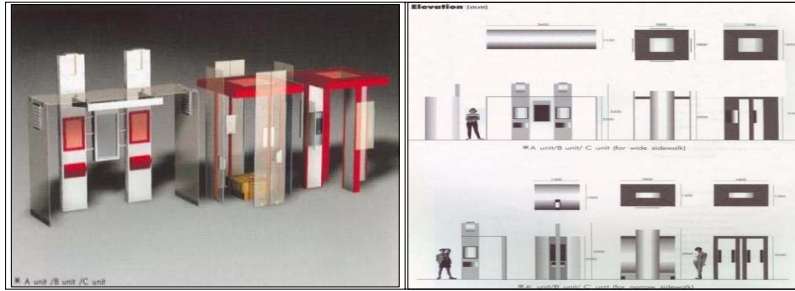
- ① 도로폭 8m이상, 보도폭 3m이상의 도로에 가로수 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그 폭원보다 도로의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한다.
- ② 가로조명과 교통안내표지판, 가로장치물 등이 가로수로 차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 ③ 간선도로의 교차부분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인이 도로 변화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수목식재를 배제하여 시야를 개방한다.
- ④ 2열식재(건물앞 식재포함)를 원칙으로 하고 일반가로변 식재는 간격 6~8m를 유지 하되 버스정차장 주위에는 이용객 및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해 일정거리(20m)를 후퇴하여 식재한다.
- ⑤ 가로변 독자성과 식별성 구현을 위해 일정구간을 기본단위로 수종선택 및 배식기법의 다양화를 기하며 수목을 통한 지역특성의 차별화를 도모한다.
- ⑥ 보행밀도가 높은 곳의 가로수는 생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수목보호대를 폭 1-2m 이하로 설치하고 수목보호대를 이용한 다용도 휴게·벤치공간(공공조경)을 조성한다.
- ⑦ 지하 공동구와 같은 구조물이 있는 인공지반위에 식재할 경우 1.2m의 토심과 주당 최소 9㎡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⑧ 건물과 건물 사이에 가려져 있는 녹지 및 조형물의 전방배치를 유도하여 승/하차장 주변 위주로 pocket-park 형식의 정적 휴게공간 설치를 유도한다.

제7절 가로 장치물

제29조(설계기준)

- ① 가로상에 배치되는 각종 가로장치물간의 형태적 부조화를 방지하고, 가로변 이미지의 제고를 위해 가로장치물의 형태, 재료, 색상을 통합·조정하는 가로장치물 개발 기본 전략 프로그램으로 구축하고 이를 가로장치물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 ② 가로별 특화를 위해 가로의 성격에 따라 특정가로 단위로 작성하여 가로별 재료, 형태의 동질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③ 도로성격에 따라 상호보완적 가로장치물은 배치유형을 도출하여 가급적 통합설치하여 보도구간내에 각종 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한다.
- ④ 주요시설 입구,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지점, 횡단보도 등 주요 집분산 지점에 가로 장치물을 집중설치하여 집약적 효과를 도모하여야 한다.

■ 가로장치물 예시도



제30조(방호 울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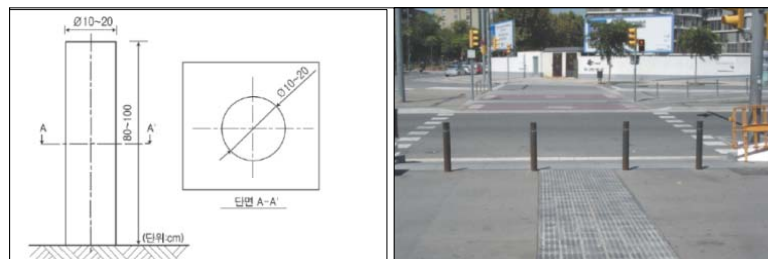
- ① 보도가 있는 일반도로에서 보행자의 도로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구간이나 불법 승 하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 상황에 따라 간선가로변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 방호울타리 예시



제31조(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

- ①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cm 내외로 하고, 그 지름은 10~20cm 내외로 하며, 간격은 1.5m 내외로 하여야 한다.
- ④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0.3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의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2조(방음벽)

- ① 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음저감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하여 목재방음벽, 투명방음벽, 식생형 방음벽 등으로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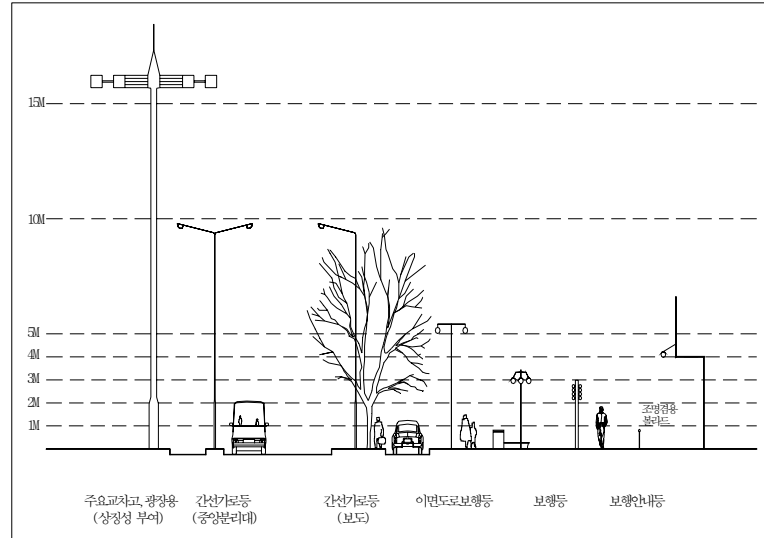
제8절 조명

제33조(가로등 배치원칙)

- ① 조명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도로구조령중 도로의 조명시설 기준에 의해 설치 하며 도로의 성격, 기능, 폭 원에 따라 적합한 조도수준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교차로, 횡단보도, 커브길, 로타리등 사고 빈발예상 지점은 강화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일반가로상에는 메탈할라이드의 광원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공원변에 있어 국부적으로 조정하여 장소별 특색을 갖도록 한다.

■ 조명시설의 종류(가로등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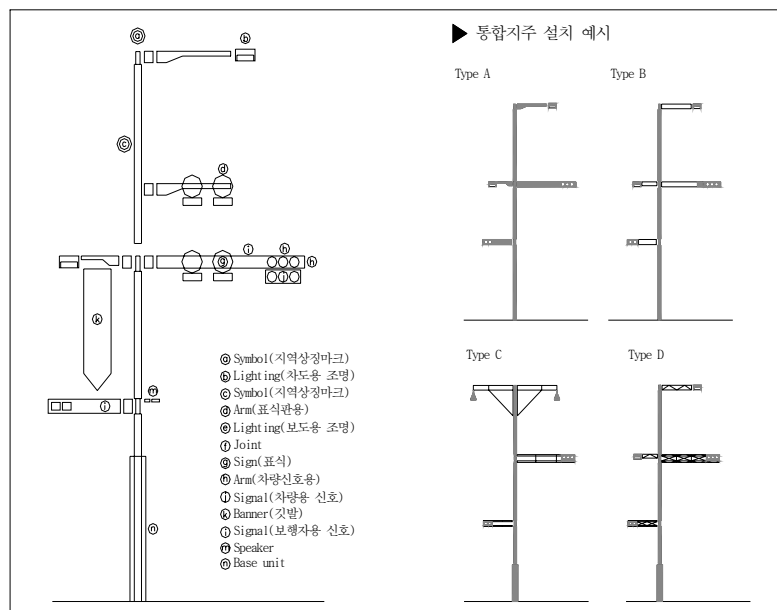
제34조(보행등 배치원칙)

- ① 보행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8m를 초과하지 않는 인간적 척도의 규모로 사용하며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장소적 특질을 고양할 수 있도록 녹지등, 볼라드형등, 장식등 등으로 구분 허용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를 선별 적용한다.

제35조(통합지주 배치원칙)

- ① 교통안전과 상충되는 부분을 제외한 교차로, 횡단보도등 교통안전시설의 집중설치가 필요한 지점에는 가로등, 신호등, 교통안전표시 등을 통합 설치하여 가로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하여야 한다.
- ② 신호등, 교통안전표시등과 조명시설이 통합설치되는 경우에는 지내력, 풍압등에 대한 구조적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 통합지주 설치 예시



제36조(야간조명의 강화)

- ① 야간보행등을 독특하게 설계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주요교차로의 보차도 경계석은 형광 물질이 부착된 것으로 교체하여 야간에도 쉽게 장소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② 야간 보행밀도가 많은 공공보행통로 주변 차도측으로 보행등 겸 벤치·볼라드를 설치하여 야간보행자의 안전과 휴게·편익을 도모한다.
- ③ 기존의 상부조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야간경관 증진을 위해 하부조명의 상향 및 측향식 조명을 강화하여 야간의 가로환경 및 인지도를 부각시킨다.
- ④ 공공이 야간경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민간의 적극적인 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제9절 주차장

제37조(적용범위)

- ① 도시계획시설중 주차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주차장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양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제38조(조성원칙)

- ① 대지의 용도는 평면주차장 조성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자전거 이용객을 위한 자전거보관소는 일정규모이상 주차장 용지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절 공원

제39조(적용범위)

- ① 본 지침은 도시계획시설중 공원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제40조(공간구성)

- ① 현대적 시설위주로 조성하며 공원의 규모 및 이용권을 고려하여 공원진출입구를 작성 배치한다.
- ② 이용형태별로 동적공간, 정적공간으로 구획하여 공간을 구성한다.
- ③ 놀이, 운동, 휴식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 ④ 공원내의 포장, 시설등에는 고양시 및 각 취락지구를 상징할수 있는 문양을 도입한다.

제41조(식재)

- ① 중심공간은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형적으로 식재한다.
- ② 외곽은 상록수 위주로 차폐식재하고 공원내부는 화목류 및 낙엽교목으로 계절감을 느낄수 있도록 경관·녹음식재를 한다.
- ③ 넓은 녹지의 수종은 단순화하며, 향토수종 위주로 식재한다.
- ④ 병렬식재, 교차식재, 군식재 등으로 자연스런 경관을 유도한다.

제42조(포장)

- ① 부드러운 분위기와 자연적인 소재 위주로 포장한다.
- ② 격자형 패턴등으로 정형성을 유지한다.
- ③ 부분적으로 장식포장을 가미한다

제43조(시설물)

- ① 각 공간구성에 맞는 휴게시설, 운동시설, 조명시설등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 ② 시설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③ 모든시설물의 설계는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 경제성을 고려하고 또한, 유지관리도 편리하도록 한다.
- ④ 공원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상면의 수목보호를 위한 충분한 지표면처리 및 상부 구조체에 작용하는 각종 하중(휴무계, 조경식재, 적재하중 등)을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보한 후 설치한다.

제44조 (근린공원)

- ① 근린주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토록 설치한다.
- ② 공원은 놀이공간, 운동공간, 편익공간, 관리공간, 휴게공간,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부합되는 시설을 도입하도록 한다.
- ③ 장소성제공과 독자성부여를 위해 공원출입구, 중심광장지점 등에 심볼, 문양 등의 설치 및 공원별 식재수종의 개성화로 공원별로 특화가 되도록 조성한다.

제45조 (어린이공원)

- ① 공원은 놀이공간, 휴게공간, 보행공간, 녹지공간으로 구분하여 조성한다.
- ② 놀이공간에는 어린이들이 호기심 및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단순놀이기구, 모험놀이기구, 복합놀이기구 등을 구분하여 설치한다.
- ③ 녹지공간에는 녹음성과 관상성, 기능성을 고려하되 고양시 향토수종 및 유실수, 화목류 등을 집중식재토록 한다.
- ④ 휴게공간에는 정자, 파고라, 긴의자, 휴지통 등을 설치토록 한다.
- ⑤ 놀이공간에는 충격을 완화흡수 할 수 있는 모래 등의 바닥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휴게공간이나 보행공간에는 소형 고압블럭, 투수콘 등의 내구성 있는 포장재를 사용한다.
- ⑥ 공원출입구는 2개소이상 설치하며 1개소는 10%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한다.

제11절 완충녹지

제46조(적용범위)

- ① 본 지침은 도시계획시설중 완충녹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양시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제47조(조성원칙)

- ①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과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사고 재해 방지를 위해 설치하며,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하는 시각적, 심리적 효과도 증진시키도록 한다.
- ② 완충녹지는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운행과 동시에 차광, 명암순응, 시설유도, 방향성 제고 등을 위해 설치한다.

제48조(공간구성)

- ① 일체화된 수목의 연속적인 공간으로 구성한다.
- ② 완충녹지의 녹화면적은 80%이상 되도록 유지한다.

제49조(식재)

- ① 도로변 완충녹지는 차음 축조하여 조성한 후, 지엽이 치밀한 상록수와 낙엽수를 혼식하여야 한다.
- ② 넓은 면적으로 설정된 구간에서는 가급적 도로쪽으로 면하여 밀식하여, 소음방지 및 완충효과를 도모하여야 한다.
- ③ 간선도로와 주거지 사이에 설정된 완충녹지에서는 가급적 가로 및 주거지쪽으로 면하여 식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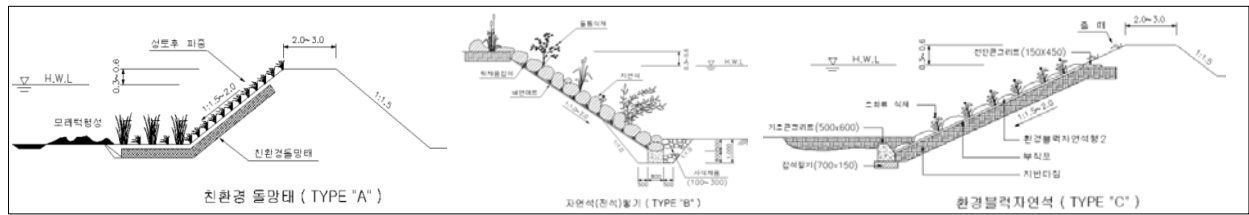
제12절 기타녹지

제50조(공공공지)

- ① 일반도로에 면한 공공공지는 주거지경계변에 수목을 식재토록 하며 일부 공간은 휴게공간으로서 설치한다.
- ② 일반도로에 면한 공공공지의 포장은 소형고압블럭, 투수콘, 컬러아스콘 등으로 설치하며 연계되는 보도와는 연속성 및 일체감을 확보토록 조성한다.
- ③ 소하천변에 면한 공공공지는 소하천과 적극적인 연계활동이 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
- ④ 소하천변 공공공지의 수목식재는 하천경관과 조화되는 수종을 선택한다.

제51조(소하천호안)

- ① 소하천호안은 제방의 법면을 보호하면서 생물의 서식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형의 호안공법으로 조성한다.
다만 통수기능상 하천법람방지, 제방보호 등을 위하여 옹벽, 석축처리가 필요한 하천구간은 예외를 적용한다.



제3편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52조(설계도서 작성)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공공부문을 조성하고자 하는자는 지구단위계획의 공공부문 지침을 기초로 하여 부문별로 면밀한 여건분석, 계획 및 설계 등을 통한 상세도서 작성 후 집행하여야 한다.

제53조(지침의 조정)

- ① 본 지침상의 예시된 사항이라도 향후 별도의 부문별설계, 구역별설계 등의 상세설계가 추진되어 본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또는 본 지침에 대한 조정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들 “상세설계”를 반영하여 본 지침을 조정·수정할 수 있다.
- ②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모든 시설은 본 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동 지침 승인 이전에 관계법령에 의거 승인을 얻어 기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사업으로서 동 지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2.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시설등 타 법령의 시설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본 지침과 상충되는 경우
 3. 관계법령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 지침적용이 어려운 경우

부 칙

제1조 (지구단위계획의 적용례)

- ① 지구단위계획결정이후 설치하는 공공부문의 모든 기반시설에 적용한다.

제2조 (공원, 주차장용지의 ‘대지내 공지’ 이용)

- ① 공원, 주차장용지내에 건축한계선지정으로 생긴 도로경계선사이의 공지는 해당 용지의 지정용도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지내 공지”와 동일하게 보행 또는 차량을 위한 통로 등의 용도로 조성한다.

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고양시 공고 제2014-326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한양대중골프장9홀 등)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1. 고양시 고시 제2013-315호(2013.10.29)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되어 시행 중에 있는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528-3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한양대중골프장 9홀, 대로1-9호선, 교통광장-가감차로개설)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사항 반영 등을 위해 코스시설 변경을 위한 사유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같은법 제9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전 열람·공고합니다.
3.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2. 28.
고 양 시 장

1)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의 내용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고양시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528-37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칭 : 체육시설(한양대중골프장9홀), 도로(대로1-9호선), 교통광장
-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토지이용계획

구분	도시계획시설명	규모	위 치	비고
결정	체육시설 (대중골프장9홀)	1,810,369㎡ (회원제골프장1,458,685㎡) (대중골프장 351,684㎡)	덕양구 성사동, 원당동, 원흥동 일원	
	대로1-9호선	B=35~40, L=4,890m	동산동 27-58~ 성사동 산131-9	
	교통광장	64,758㎡	성사동 산57-9	
금회	체육시설 (대중골프장9홀 증설)	351,684㎡	원흥동 528-37일원	세부계획 변경
	대로1-9호선	105㎡(가감차로 확보)	성사동 291-2, 291-3, 291-4	
	교통광장	440㎡(가감차로 확보)	성사동 291-3, 291-13	

- 체육시설 세부계획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고
		당초	변경	변경후		
계		351,684	-	351,684	100.00	
체육시설용지		100,560	감)14,404	86,156	24.50	
건축시설용지		990	증)959	1,949	0.55	
기반시설용지		36,884	증)6,889	43,773	12.45	
녹지 시설용지	계	213,250	증)6,556	219,806	62.50	
	복원녹지	84,965	감)4,887	80,078	22.77	
	원지형보전녹지	128,285	증)11,443	139,728	39.73	

- 건축계획

구분	부지면적(㎡)			연면적(㎡)			비고
	당초	변경	변경후	당초	변경	변경후	
계	990	증)959	1,949	2,762.57	감)80.51	2,682.06	
클럽하우스	865	증)959	1,824	2,688.24	감)80.51	2,607.73	1동
티하우스	105	-	105	59.46	-	59.46	1동
경비실	20	-	20	14.87	-	14.87	1동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주)한양컨트리클럽 대표이사 이승호, (사)서울컨트리클럽 이사장 홍순직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2010.2.22. ~ 2014.10.31.
- 변경) 2010.2.22. ~ 2015.4.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 조서와 같음”(변경)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다항” 중 대로1-9호선 105㎡, 교통광장 440㎡ 가·감속차로(별첨 조서와 같음,변경없음)

아. 열람기간 및 장소 : 공고일(시보 게재일)로부터 15일간,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43)

2)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

- 체육시설(소재지 : 고양시 덕양구) :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성사동	291-0	전	1,172	1,172	최은숙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96 현대삼환아파트 101-1001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울산시 동구 전하동1	근접당 지상권	
2	"	291-1	체	8,050	6,931	(주)한양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3	"	301-1	체	329,613	238	(주)한양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4	"	312-17	임	40,566	12,349	(주)한양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5	원당동	198-51	체	170,773	1,749	(주)한양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6	"	198-127	체	3,676	3,676	(주)한양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7	"	198-131	체	5,857	3,894	(주)한양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8	"	198-132	임	3,223	2,386	(주)한양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9	"	198-141	임	22,532	6,966	(주)한양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한국전력 공사		지상권	당초
	"	198-141	임	18,021	6,966	(주)한양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한국전력 공사		지상권	변경
10	"	198-205	도	2,784	1,354	(주)한양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11	"	198-206	임	1,160	1	(주)한양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12	원흥동	495	전	1,931	1,931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13	"	499	답	435	435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14	"	500-1	답	1,974	1,974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15	"	500-2	답	3,064	3,064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16	"	501	답	559	559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17	"	502	답	2,150	2,150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18	"	503	답	3,072	3,072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19	"	504	답	5,931	5,931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20	"	527-1	전	612	612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21	"	527-2	전	959	959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22	"	527-3	잡	5,630	5,630	(주)한양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23	"	527-6	대	1,111	1,111	(주)한양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24	"	527-7	대	6,119	6,119	(주)한양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25	"	528-1	유	3,952	3,952	(주)한양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한국전력 공사		지상권	
26	"	528-2	답	3,630	3,630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27	"	528-3	답	1,835	1,835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28	"	528-4	답	1,805	1,805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29	"	528-5	답	4,185	4,185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30	"	528-6	답	1,269	1,269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31	"	528-7	답	664	664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32	"	528-8	답	3,858	3,858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33	"	528-9	답	456	456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34	"	528-10	답	139	139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35	"	528-11	답	1,569	1,569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36	"	528-12	답	3,769	3,769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37	"	528-17	전	2,202	2,202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38	"	528-18	전	1,263	1,263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39	"	528-19	전	562	562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40	"	528-20	전	922	922	(주)한양 (사)서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41	"	528-21	전	202	202	(주)한양 (사)서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42	"	528-22	전	463	463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43	"	528-23	묘	89	89	(주)한양 (사)서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44	"	528-24	잡	982	982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45	"	528-25	전	377	377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46	"	528-26	전	165	165	(주)한양 (사)서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47	"	528-27	전	106	106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48	"	528-28	전	1,071	1,071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49	"	528-29	잡	69	69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50	"	528-30	잡	2,198	2,198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51	"	528-31	전	1,954	1,954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52	"	528-32	전	2,995	2,995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53	"	528-33	잡	1,564	1,564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54	"	528-34	전	1,193	1,193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55	"	528-35	대	112	112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56	"	528-36	대	235	235	(주)한양 (사)서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57	"	528-37	임	110,500	101,198	(주)한양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한국전력 공사		지상권	당초
	"	528-37	임	114,391	101,198	(주)한양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한국전력 공사		지상권	변경
58	"	528-38	대	10	10	(주)한양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59	"	528-77	도	12	12	(주)한양 (사)서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60	"	528-43	임	7,124	6,590	(주)한양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61	"	528-45	도	1,168	1,168	(주)한양 (사)서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62	"	528-46	임	257	257	(주)한양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63	"	528-47	잡	4,972	4,972	(주)한양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64	"	528-53	임	2,996	2,996	(주)한양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국(철도청), 한국전력공사		지상권	
65	"	528-54	임	12,579	12,579	(주)한양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한국전력 공사		지상권	
66	"	528-55	임	1,431	1,391	(주)한양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국(철도청)		지상권	
67	"	528-56	임	77,199	21,135	(주)한양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한국전력 공사		지상권	
68	"	528-59	도	305	305	(주)한양 (사)서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국(철도청)		지상권	
69	"	528-60	도	3,102	3,102	(주)한양 (사)서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70	"	528-63	철	617	617	국 (국토해양부)					
71	"	528-64	임	3,074	3,074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72	"	528-67	임	16,760	16,760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73	"	528-68	임	9,831	9,831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74	"	528-69	임	17,058	17,058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75	"	528-74	임	2,479	2,479	(주)한양 (사)서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76	"	528-75	임	1,400	1,400	(주)한양 (사)서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77	"	532-1	임	3,471	3,471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78	"	532-2	임	3,471	3,471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79	"	534-2	전	1,527	1,527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80	"	535-1	전	377	377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81	"	535-2	전	6,529	6,529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82	"	535-3	전	3,650	3,650	(주)한양 (사)서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83	"	535-4	전	747	747	(주)한양 (사)서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84	"	536-1	전	760	760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85	"	536-2	전	261	261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86	"	537-1	도	20	20	(주)한양 (사)서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87	"	537-2	잡	294	294	(주)한양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88	"	569-1	구	606	606	(주)한양 (사)서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89	"	569-13	구	369	369	(주)한양 (사)서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90	"	529-1	전	992	992	정준화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 동 431 한양아파트 4 동 1103				
91	"	529-2	전	631	631	박봉철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404-28미미아파트 가동 403호	(주)한양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당초
	"	529-2	전	631	631	(사)서울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주)한양 컨트리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변경
92	"	529-3	대	357	357	정준화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 동 431 한양아파트4동 1103				
93	"	569-8	구	295	295	국 (국토해양부)					
94	"	583	도	275	275	국 (국토해양부)					
계					351,684						

- 대로1-9호선(소재지 : 고양시 덕양구) : 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성사동	291-2	도	1,031	19	경기도					
2	"	291-3	전	643	60	경기도					
3	"	291-4	구	366	26	국 (국토해양부)					
합계				2,040	105						

- 교통광장(소재지 : 고양시 덕양구) : 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성사동	291-3	전	643	214	경기도					
2	“	291-13	임	1,963	226	경기도					
합계				2,606	440						

○ 수용할 물건(지장물) 조서(소재지 : 고양시 덕양구) : 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원흥동	527-1	주차장	천막	40㎡	(주)한양 (사)서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198-114				
2	원흥동	528-20	웬스	철재	104m	(주)한양 (사)서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198-114				
3	원흥동	528-21	웬스	철재	52m	(주)한양 (사)서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198-114				
4	원흥동	528-23	분묘	묘지	1기	(주)한양 (사)서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198-114				
5	원흥동	528-36	단독주택 창고	벽돌 컨테이너	130.95㎡ 15㎡	(주)한양 (사)서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198-114				
6	원흥동	535-3	비닐하우스1	비닐/목재	17.5㎡	(주)한양 (사)서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198-114				
			비닐하우스1	비닐/목재	46.5㎡						
			화장실1	목재	2.25㎡						
			화장실2	이동식	1식						
			창고1	샌드위치판 넬조	28㎡						
			창고2	목재	6㎡						
			창고3	컨테이너	20㎡						
			창고4	목재	25㎡						
			창고5	목재	8.75㎡						
			창고6	컨테이너	18㎡						
			창고7	컨테이너	8㎡						
			축사1	목재	24㎡						
			축사2	목재	14㎡						
			창고	샌드위치판 넬조/컨테 이너	44㎡						
			분묘	묘지	2기						
7	원흥동	535-4	창고	컨테이너	18㎡	(주)한양 (사)서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198-114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1㎡						
8	원흥동	529-1	개집	철재/목재	70개	최향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529-3				
9	원흥동	529-3	단독주택	벽돌/ 컨테이너	54.0㎡	정준화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431 한양아파트4동 1103				
			창고1	벽돌	5.4㎡						
			창고2	목재	4.5㎡						
			비닐하우스	비닐/목재	15.8㎡						
10	원흥동	529-1	매실나무	8년생	1주	최향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529-3				
			자두나무	9년생	1주						
			대추나무	10년생	1주						
			잡자재	5ton	1대						
11	원흥동	529-3	거 실	판넬및목재	33.5㎡	최향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529-3				

고양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하수도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고양시 하수도조례 제2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8일

고 양 시 장

○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2014년도	1,178,000원	(전년대비 7.1%증가)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적용한다.
- ②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이전에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고양시 공고 제2014-341호

도시계획시설(대로3-62호선, 중로1-25호선 확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전 공람 공고(안)

1. 우리시 일산동구 백석동 503-172번지 ~ 장항동 522-12번지 일원 고양시에서 추진예정인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62호선, 중로1-25호선 확장)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신청되어, 같은법 제90조 규정에 의거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031-8075-31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2014년 02월 28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503-17번지 ~ 장항동 522-1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62호선, 중로1-25호선 확장)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도로

구분	규 모				연장(m)	비 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m)		
결 정	대 로	3	62	27~33.5	2,467	
금회시행	대 로	3	62	27~33.5	2,467	보조간선도로
결 정	중로	1	25	20	896	
금회시행	중로	1	25	20	896	집산도로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
- 성명 : 고양시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7.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동일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 토지조서(대로3-62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자			비고
				지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구분	
1	일산동구 장항동	525-10	도	40	2	공	고양시				
2	“	525-36	답	12	12	정동희	양천구 목동서로 65,1101호				
3	“	525-34	전	137	2	김명선	장항동 438				
4	“	525-11	도	18,720	133	공	고양시				
5	“	525-35	답	150	150	정동희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65,1104호(목동,목동가든스위트)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9-1 (서강지점)	지상권/근저당권	
6	“	525-7	답	1,183	432	정동희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65,1104호(목동,목동가든스위트)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9-1 (서강지점)	지상권/근저당권	
7	“	525-38	구	6	6	국	농림축산식품부				
8	“	525-8	구	1,392	65	국	농림축산식품부				
9	“	525-39	도	3	3	국	농림축산식품부				
10	“	525-9	도	1,699	81	국	농림축산식품부				
11	“	522-37	도	500	500	국	농림축산식품부				
12	“	526-11	답	2,823	1,228	김승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131-11, 301동 1502호(행신동,행신3차에스케이뷰아파트)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가 101-1 (주엽역지점)	근저당권	
13	“	526-12	도	102	102	공	고양시	고양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66-4 (능곡지점)	근저당권	
14	“	526-16	전	1,322	374	유인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5 호수마을 401-403				
15	“	527-12	도	7	7	공	고양시				
16	“	527-9	답	1,582	740	김경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8-14	신한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일산/입금용지점)	근저당권	
17	“	527-10	구	2,178	46	국	농림축산식품부				
18	“	528-13	도	2,330	37	국	농림축산식품부				
19	“	528-12	전	4,460	1,494	주상덕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296-37				
20	“	528-16	도	111	111	공	고양시				
21	“	525-10	도	40	2	공	고양시				
22	“	525-36	답	12	12	정동희	양천구 목동서로 65,1101호				
23	“	525-34	전	137	2	김명선	장항동 438				
24	“	525-11	도	18,720	133	공	고양시				
25	“	525-35	답	150	150	정동희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65,1104호(목동,목동가든스위트)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9-1 (서강지점)	지상권/근저당권	
26	“	525-7	답	1,183	432	정동희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65,1104호(목동,목동가든스위트)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9-1 (서강지점)	지상권/근저당권	
27	“	525-38	구	6	6	국	농림축산식품부				
28	“	525-8	구	1,392	65	국	농림축산식품부				
29	“	525-39	도	3	3	국	농림축산식품부				
30	“	525-9	도	1,699	81	국	농림축산식품부				
31	“	522-37	도	500	500	국	농림축산식품부				
32	“	526-11	답	2,823	1,228	김승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131-11, 301동 1502호(행신동,행신3차에스케이뷰아파트)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가 101-1 (주엽역지점)	근저당권	
33	“	526-12	도	102	102	공	고양시	고양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66-4 (능곡지점)	근저당권	
34	“	526-16	전	1,322	374	유인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75 호수마을 401-403				
35	“	527-12	도	7	7	공	고양시				
36	“	527-9	답	1,582	740	김경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8-14	신한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일산/입금용지점)	근저당권	
37	“	527-10	구	2,178	46	국	농림축산식품부				
38	“	528-13	도	2,330	37	국	농림축산식품부				
39	“	528-12	전	4,460	1,494	주상덕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296-37				
40	“	528-16	도	111	111	공	고양시				
41	“	543-13	대	730	14	윤태흠	평택시 통북동 61				
42	“	546-15	대	495	15	이정은	일산동 580-18				
43	“	546-26	대	260	13	이정은	일산동 580-18				
44	“	522-5	도	13,781	13,781	국	농림축산식품부				
45	“	546-27	창	1,322	74	이정은	일산동 580-18				
46	“	546-31	창	337	4	장숙자	평촌동 932-2꿈마을@801-801				
47	“	546	창	352	34	이정은	일산동 580-18				
48	“	546-12	구	1,090	6	국	농림축산식품부				
49	“	546-11	도	2,041	7	국	농림축산식품부				
50	“	547-8	잡	1,155	66	강용택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47				

51	“	547-11	대	992	2	신우복	마두동 794강촌마을 804-801				
52	“	547-12	창	1,317	27	강용택	장항동 547				
53	“	547-4	도	347	2	국	농림축산식품부				
54	“	547-15	대	506	11	강용구	강서구 등촌동 한사람2차삼성@203-1004				
55	“	547-17	잡	262	1	강용구	강서구 등촌동 한사람2차삼성@203-1004				
56	“	547-40	도	1,121	25	국	농림축산식품부				
57	“	566-7	대	635	4	황한익	장항동 566-7				
58	“	522-13	구	13,339	13,280	국	농림축산식품부				
59	“	565-9	구	681	49	국	농림축산식품부				
60	“	571-9	도	1,550	106	국	농림축산식품부				
61		571-7	대	612	210	이막달	서울 강서구 등촌동 647-3				
62	“	571-10	전	322	208	이막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71-7				
63	“	571-11	전	991	856	김상국	일산동 1566-2 중산마을 906-104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파주지점)	근저당권	
64	“	571-6	전	6,819	441	윤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73-12	일산농업협 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574-28 (장항지점)	근저당권	
65	“	577-5	전	3,877	1,596	김현정	서울 양천구 목동 912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510-607				
66	“	577-7	도	95	95	공	고양시				
67	“	577-6	구	616	55	국	농림축산식품부				
68	“	583-6	도	884	69	국	농림축산식품부				
69	“	583-9	도	1	1	김후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88	조리농업협 동조합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210-16	지상권/ 근저당권	
70	“	583-7	창	2,008	850	노상민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387-13	중소기업은 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파주지점)	근저당권	
71	“	583-5	창	994	547	노상민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387-13	중소기업은 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파주지점)	근저당권	
72	“	590-6	구	1,052	69	국	농림축산식품부				
73	“	590-5	전	1,178	1,120	이미영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18-44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일산동지점)	근저당권	
74	“	590-4	과	4,637	469	이기성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438				
75	“	590-9	도	1,481	454	공	고양시				
76	“	590-7	도	694	100	국	농림축산식품부				
77	“	595-4	구	574	79	국	농림축산식품부				
78	“	595-7	도	601	246	공	고양시				
79	“	595-3	전	2,377	966	천용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89 한라비발디파크 101-1904	일산농업협 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594-28 (자유로지점)	근저당권	
80	“	595-12	과	1,653	629	김영자	서울 양천구 목동952 목동신시가지@ 701-11404				
81		595-5	구	788	70	국	농림축산식품부				
82	“	600-3	전	4,227	1,756	오명호	지도읍 행신리 57				
83	“	600-4	구	533	57	국	농림축산식품부				
84	“	605-7	도	700	71	국	농림축산식품부				
85	“	566-48	잡	892	25	이완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438				
86	“	566-49	대	858	44	이완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438				
87	“	578-4	도	450	13	국	농림축산식품부				
88	“	578-3	구	200	4	국	농림축산식품부				
89	“	578-7	대	341	36	신원식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438				
90	“	578-8	대	515	6	신원식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438				
91	“	578-9	창	891	52	신원식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438				
92	“	578	대	992	20	신원식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438				
93	“	578-31	구	155	58	한국농어 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94	“	578-33	대	384	3	윤원식	덕양구 토당동873장미@801-1204				
95	“	578-38	답	15	15	한만국	장항동 438				
96	“	578-39	답	21	21	한만국	장항동 438				
97	“	578-37	구	89	89	한국농어 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98	“	578-5	도	10,824	7,432	국	농림축산식품부				
99	“	551-2	구	31,881	1,788	국	농림축산식품부				
100	“	578-44	구	106	106	국	농림축산식품부				

101	일산동구 장항동	601-22	대	330	7	이을순	장항동 601-22				
102	"	605-8	답	1,985	514	김정백	경기도 일산시 일산동구 백석동 1344 환돌마을 502-803	일산농업협 동조합	경기도고양시일산서 구 일산동 594-28	근저당권	
103	"	605-9	답	1,652	476	양청본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02-13				
104	"	605-5	전	1,322	358	장난희	경기도 파주시 마포동 22-112동 2101호(야당 동한빛마을 1단지 한미빌딩 샌드박스)	일산농업협 동조합	경기도고양시일산서 구 일산동 594-28	근저당권	
105	"	605-6	구	805	59	국	농림축산식품부				
106	"	610-3	전	1,649	621	오일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노침길 28(장항동)	농업협동조 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당산지점)	지상권/ 근저당권	
107	"	610-5	전	1,653	576	이준경	파주시 금촌동 792-1 밀레니엄아파트 103-401				
108	"	610-4	구	1,071	89	국	농림축산식품부				
109	"	625-5	도	1,013	92	국	농림축산식품부				
110	"	625-4	전	3,119	1,243	손용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438				
111	일산동구 백석동	1087-4	구	952	47	국	농림축산식품부				
112	"	1087-7	답	992	992	김형남 외1	지도면 행주외리 185-9				
113	"	1087-10	구	8,725	3,184	국	농림축산식품부				
114	"	1087-5	도	874	54	국	농림축산식품부				
115	"	1087-6	구	511	32	국	농림축산식품부				
116	"	1089-5	장	1,487	631	서용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085-5	우리는행	서울 중구회현동1가 203(대림3동지점)	근저당권	
117	"	1089-8	답	827	338	김옥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267 숲속마을 504-503				
118	"	1089-7	창	827	436	전혜자	장항동 624-23				
119	"	1089-6	구	1,087	67	국	농림축산식품부				
120	"	1091-12	전	1,420	1,108	서용웅 외1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산11-244 세한숲속마을 1-1202				
121	"	1087-9	도	1,068	1,068	국	농림축산식품부				
122	"	1091-7	대	496	349	김명규 외1	서울 관악구 봉천동 1000 관악현대아파트 109-901				
123	"	1091-8	구	626	33	국	농림축산식품부				
124	"	907-396	도	7	7	장동식	장항동 438-2229				
125	"	1093-4	도	882	37	국	농림축산식품부				
126	"	1093-3	대	381	72	장운용	1317현대밀라트1 씨-1010				
127	"	907-300	대	79	79	문희경	주엽동50강선마을601-803				
128	"	907-378	구	19	19	한국농어촌 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129	"	915-20	도	228	228	국	국토교통부				
130	"	907-134	구	99	46	한국농어촌 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131	"	907-302	대	489	487	장만조	서울마포구합정동355-18,202				
132	"	907-304	대	314	203	이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136(백석동)	(주)윙창상 호저축은행	경기광명시철산동250	근저당권	
133	"	907-307	대	542	226	김정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907-307	농업협동조 합중앙회	서울 중구충정로1가 75(일산지점)	근저당권	
134	"	907-11	대	1,488	139	정순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907-11				
135	"	551-4	도	418	105	국	농림축산식품부				
136	"	522-9	도	619	619	국	농림축산식품부				
137	"	611-11	대	1,176	67	김근식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11	일산농업협 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일산 구 일산동 594-28 (장항지점)	근저당권	
138	"	551-5	도	801	801	국	농림축산식품부				
139	"	615	잡	7,317	6	오비맥주주 식회사	청원구 현도면 중삼리 52	한국산업은 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본점) (영등포4차)	근저당권	
140	"	550-5	도	19,424	5	국	농림축산식품부				
141	"	622	대	659	50	이정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22	우리는행	서울 중구회현동1가 203 (후곡마을지점)	근저당권	
142	"	622-10	도	17	17	공	고양시				
143	"	622-12	도	149	149	공	고양시				
144	"	622-11	대	614	88	(주)태진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22-5	국민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2가 9-1(일산기업금융지점)	근저당권	
145	일산동구 장항동	622-14	도	29	29	공	고양시				
146	"	622-15	도	12	12	국	농림축산식품부	일산농업협 동조합	경기도고양시일산 서구 일산동 594-28	근저당권	
147	"	622-16	도	14	14	국	국토교통부				
148	"	622-3	도	879	25	국	농림축산식품부	일산농업협 동조합	경기도고양시일산서 구 일산동 594-28	근저당권	
149	"	624-7	도	10	10	공	고양시				
150	"	624-6	도	84	82	공	고양시	농업협동조 합중앙회	서울중구충정로1가 75 (당산지점)	지상권/ 근저당권	

151	일산동구 장항동	510	도	194	194	국	국토교통부				
152	“	624	잡	1,008	9	강봉자	대치동 506선경@4-301				
153	“	624-3	구	579	190	국	농림축산식품부				
154	“	624-38	대	1,007	22	신정자	서울양천구신정동318-10삼성캐르 빌1책1301				
155	“	624-4	구	122	122	공	고양시				
156	일산동구 백석동	510-5	전	177	177	국	기획재정부				
157	“	510-8	전	39	39	이광훈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130(백석동)	일산농업협 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504-28(장항지점)	근저당 권	
158	“	510-6	대	217	217	이광훈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130(백석동)				
159	“	510-9	전	6	6	국	기획재정부	한국산업 은행	서울 영등포구여의도동 16-3 (본점)기업금84실	근저당 권	
160	“	915-41	전	227	227	국	기획재정부				
161	“	907-393	전	184	3	정순자	백석동 907-11				
162	“	907-54	전	410	218	정순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907-11				
163	“	907-208	창	947	39	이광훈	일산동구 장항로 130				
164	“	915-49	대	126	28	이광훈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130(백석동)				
165	“	915-50	전	6	6	국	기획재정부				
166	“	1104-5	도	44	44	공	고양시				
167	“	1104-6	대	357	242	정순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907-11				
168	“	1104-101	도	11	4	이광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10 풍림아이원 아파트 205-703				
169	“	1098-6	도	5	5	국	농림축산식품부				
170	“	1098-3	도	163	42	국	농림축산식품부				
171	“	1098-7	도	5	5	국	농림축산식품부				
172	“	1098-4	구	138	35	국	농림축산식품부				
173	“	1104-11	도	2	2	공	고양시				
174	“	1104-12	도	14	14	국	농림축산식품부				
175	“	1104-10	주	1,460	346	이영희 외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18-60	SK네트웍 스(주)	경기수원시장안구 영화동 104-28	근저당 권	
176	“	1104-13	전	20	20	국	기획재정부				
177	“	1104-14	도	12	12	공	고양시				
178	“	1104-140	잡	4	4	국	기획재정부				
179	“	1104-18	도	4	4	국	농림축산식품부				
180	“	1104-17	잡	167	25	국	기획재정부				
181	“	1104-19	도	2	2	한국농어촌 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182	“	1104-20	구	59	10	한국농어촌 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183	“	1104-24	도	1	1	공	고양시				
184	“	1104-23	답	118	9	공	고양시				
185	“	1104-25	도	5	5	공	경기도				
186	“	1104-26	구	153	18	공	경기도				
187	“	1104-32	대	330	75	김경배 외1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589-17				
188	“	1104-33	도	26	26	공	고양시				
189	“	1104-35	대	867	44	김경배 외1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589-17				
190	“	1104-34	도	72	72	김경배 외1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589-17				
191	“	1104-104	전	471	49	박희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455 백산아파트 107-1308				
192	“	1104-106	도	3	3	공	경기도				
193	“	1104-36	도	1	1	노인선	지도면 토당리 64				
194	“	1104-132	대	54	13	서경옥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55 백산아파트 107-1308				
195	“	1104-37	대	331	5	서경옥	서대문구홍은동455백산@107-1308				
196	“	1104-107	도	21	21	공	경기도				
197	“	1104-108	대	75	62	공	경기도				
198	“	1104-109	대	189	105	공	경기도				
199	“	1104-110	전	151	85	공	경기도				
200	“	1104-47	대	169	97	공	경기도				

201	일산동구 백석동	1104-46	도	13	13	공	경기도				
202	“	1104-112	전	31	10	공	경기도				
203	“	1104-113	전	403	236	공	경기도				
204	“	1104-52	도	19	19	공	고양시				
205	“	1104-128	구	56	39	공	경기도				
206	“	1104-129	도	76	58	공	경기도				
207	“	1104-55	전	537	537	공	경기도				
208	“	1104-56	도	94	94	공	고양시				
209	“	1104-114	전	84	3	공	경기도				
210	“	0-7	미		5	공					
211	“	1104-58	구	78	78	공	경기도				
212	“	1104-57	도	21	21	공	경기도				
213	“	1104-62	답	20	18	공	경기도				
214	“	1104-63	전	197	197	공	경기도				
215	“	1104-64	도	57	57	공	고양시				
216	“	1104-65	도	13	13	공	경기도				
217	“	1104-116	답	40	1	공	경기도				
218	“	1104-68	전	7	7	공	경기도				
219	“	1104-117	전	1096	73	공	경기도				
220	“	1104-66	도	132	45	공	고양시				
221	“	1104-67	전	433	225	공	경기도				
222	“	1098-2	구	963	28	국	농림축산식품부				
223	“	1098-8	구	56	56	공	고양시				
224	“	1099-65	구	2,425	385	국	농림축산식품부				
225	“	1098	대	895	102	김정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507				
226	“	1098-9	창	997	32	김정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507				
227	“	1098-19	답	341	72	김정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507				
228	“	1098-5	도	3,006	22	국	농림축산식품부				
229	“	1100-2	도	1,354	1,354	국	농림축산식품부				
230	“	1100-41	전	2,252	615	맹상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507-183				
231	“	1100-3	도	213	213	공	고양시				
232	“	1100-42	전	260	260	맹상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507-183				
233	“	1100	전	1,731	396	맹상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507-183				
234	“	1100-43	전	260	260	맹상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507-183				
235	“	1105-3	도	23	23	공	고양시				
236	“	1105	답	1,099	875	오성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05 햇빛마을 2102-1501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지상권/ 근저당권	
237	“	1105-5	도	59	59	공	고양시				
238	“	1105-4	답	654	654	공	경기도				
239	“	1099-67	구	37	37	공	경기도				
240	“	1110-9	도	451	5	국	농림축산식품부				
241	“	1110-10	도	52	52	공	경기도				
242	“	1109-1	도	75	75	공	고양시	일산단위농 업협동조합	고양군 일산읍 일산리 594-28	근저당권	
243	“	1109-3	전	3,279	686	공	경기도				
244	“	1109	전	1,949	139	박래두	백석동1104-75				
245	“	1100-44	도	3,880	1,700	공	경기도				

● 토지조서(중로1-25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리자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구분	
1	일산동구 백석동	1104-77	도	39	13	공	고양시				
2	“	1104-76	답	123	17	공	경기도				
3	“	1104-80	전	172	80	공	경기도				
4	“	1104-120	답	988	2	공	경기도				
5	“	1104-100	도	24	24	공	고양시				
6	“	1104-121	전	463	374	공	경기도				
7	“	1104-122	답	302	249	공	경기도				
8	“	1104-83	도	72	72	공	경기도				
9	“	1104-123	대	152	113	공	경기도				
10	“	1104-124	답	42	28	공	경기도				
11	“	1104-125	전	390	228	공	경기도				
12	“	1104-94	도	10	10	공	고양시				
13	“	1104-126	답	284	125	공	경기도				
14	“	1104-95	도	20	20	공	경기도				
15	“	1104-96	도	3	3	공	경기도				
16	“	1104-127	답	39	9	공	경기도				
17	“	1114-11	구	27	13	공	경기도				
18	“	1117-31	도	5	5	공	고양시				
19	“	1117-36	대	243	96	공	경기도				
20	“	1117-34	전	101	77	공	경기도				
21	“	1117-37	도	4	4	공	고양시				
22	“	1117-41	전	5,791	50	주학선	서울 강서구 신정동 329복동 신시가지(아)1402동1303호				
23	“	1117-19	도	208	185	공	고양시				
24	“	1117-11	도	204	171	공	고양시				
25	“	1117-15	도	21	21	공	고양시				
26	“	1117-17	도	209	180	공	고양시				
27	“	1117-9	도	142	140	공	고양시				
28	“	1117-8	도	15	15	공	고양시				
29	“	1117-4	전	235	1	주상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507				
30	“	1120-39	도	75	75	공	고양시				
31	“	1120-40	도	69	69	국	농림축산식품부				
32	“	1120-38	대	100	10	공	고양시				
33	“	1120-42	도	100	100	공	고양시				
34	“	1120-68	도	60	60	유용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006	서서울농업 협동조합	서울 은평구응암동 397-95(상암지점)	근저당권	
35	“	1120-71	도	1	1	유용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006	서서울농업 협동조합	서울 은평구응암동 397-95(상암지점)	근저당권	
36	“	1120-43	도	26	26	공	고양시				
37	“	1120-41	도	536	445	국	농림축산식품부				
38	“	1120-46	도	73	73	공	고양시	최운룡	고양군 일산읍 백석리 356	근저당권	
39	“	1120-45	대	79	69	고옥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20-36	국민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2가 9-1(능곡지점)	근저당권	
40	“	1120-47	도	12	12	공	고양시				
41	“	1120-44	전	415	162	고옥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20-36	국민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2가 9-1(능곡지점)	근저당권	
42	“	1120-48	도	331	314	공	고양시				
43	“	1120-50	도	181	181	공	고양시				
44	“	1120-49	전	549	24	고옥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20-36	국민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2가 9-1(능곡지점)	근저당권	
45	“	1120-59	전	127	31	서순덕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814-76 동국휴타운 308-302				
46	“	1120-58	도	48	48	공	고양시				
47	“	1120-64	도	10	10	국	기획재정부				
48	“	1120-81	전	9	9	국	기획재정부				
49	“	1120-63	도	263	263	공	고양시				
50	“	1120-62	대	177	58	남상정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20-62	농협은행	서울 중구충정로1가 통일로 120(공곡지점)	근저당권	

51	일산동구 백석동	1120-65	도	37	33	국	농림축산식품부				
52	"	1128-2	도	3,666	3,367	국	국토교통부				
53	"	1120-12	전	2,852	552	배중남외 1인	1120-12	아남그그랑 주식회사	경기도 화성군 봉담읍 수영리 379	근저당권	
54	"	1120-69	도	36	26	나중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20-18	중소기업은행	서울중구을지로2가 50 (일산장항지점)	근저당권	
55	"	1120-17	전	51	51	국	기획재정부				
56	"	1120-16	도	88	88	고양시축산 동업조합	고양시축산동업조합				
57	"	1120-15	도	87	87	국	기획재정부				
58	"	1120-14	도	65	65	공	고양시				
59	"	1120-13	구	63	63	공	고양시				
60	"	1119-3	도	133	133	국	농림축산식품부				
61	"	1127-4	답	129	26	허주희	덕양구 화정동 868달빛마을402-105				
62	"	1127-5	답	992	115	허주희	덕양구 화정동 868달빛마을402-105				
63	"	1127-2	답	3,699	244	허영희	1124-1	일산농업협 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314-28(마두역지점)	근저당권	
64	"	1127-1	답	4,874	323	이미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126 포레비데 804호	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송파구신천동1 1-6	지상권/ 근저당권	
65	"	1127-3	대	330	88	염기성	서울 양천구 신정동 33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432-803				
66	"	1127-8	도	16	16	염기성	서울 양천구 신정동 33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431-1005				
67	"	1127	답	931	60	국	기획재정부				
68	"	1119-2	구	4,489	1,125	국	국토교통부				
69	"	1126-2	답	3,395	245	김재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19 푸른마을 302-301	하나은행	서울중구을지로1가 101-1(일산후곡지점)	근저당권	
70	"	1126-1	답	1,205	75	조성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647-49	일산농업협 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314-28(마두역지점)	근저당권	
71	"	1126	답	1,035	37	국	기획재정부				
72	"	1100-44	도	3,880	1,603	공	경기도				
73	"	1112-13	답	704	652	공	경기도				
74	"	1112-6	도	140	135	공	고양시				
75	"	1112	답	246	178	김정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507				
76	"	1112-7	도	9	9	공	경기도				
77	"	1112-14	답	27	27	공	경기도				
78	"	1112-12	도	71	71	공	고양시	일산단위농 업협동조합	고양군 일산읍 일산리 594-28	근저당권	
79	"	1112-16	전	191	191	공	경기도				
80	"	1112-15	대	49	49	공	경기도				
81	"	1112-17	도	55	55	공	경기도				
82	"	1113-9	답	247	246	공	경기도				
83	"	1113-8	답	181	93	공	경기도				
84	"	1113-5	구	396	381	공	경기도				
85	"	1115-10	전	4	2	공	경기도				
86	"	1115-9	대	66	63	공	경기도				
87	"	1115-12	도	5	5	정지성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15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백마지점)	근저당권	
88	"	1115-11	전	11	11	공	경기도				
89	"	1115-14	도	17	17	정지성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15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중구충정로1가 75 (백마지점)	근저당권	
90	"	1115-13	전	1,816	210	정지성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15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중구충정로1가 75 (백마지점)	근저당권	
91	"	1113-6	구	610	175	국	농림축산식품부				
92	"	1121-4	도	756	30	국	농림축산식품부				
93	"	1121	대	160	63	허경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21	우리은행	서울중구회현동1가 203 (북가좌동지점)	근저당권	
94	"	1100-45	도	839	839	국	농림축산식품부				
95	"	1121-14	답	85	85	허경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21	우리은행	서울중구회현동1가 203 (북가좌동지점)	근저당권	
96	"	1121-16	도	20	20	허경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21	우리은행	서울중구회현동1가 203 (북가좌동지점)	근저당권	
97	"	1121-17	답	59	59	허경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21	우리은행	서울중구회현동1가 203 (북가좌동지점)		
98	"	1122-15	대	491	223	오동보	서울 마포구 현석동 222 강변현대홈타운아파트 106-702	중소기업은행	서울중구을지로2가 50(화정역지점)		
99	"	1122-14	도	26	26	국	농림축산식품부				
100	"	1117-16	도	56	56	공	고양시				

101	일산동구 백석동	1122-16	도	23	23	황기성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322-3	신도농업 협동조합	경기도고양시덕구 삼송동 26-8	근저당권	
102	"	1122-42	대	14	14	황기성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322-3	신도농업 협동조합	경기도고양시덕구 삼송동 26-8	지상권/ 근저당권	
103	"	1122-43	답	224	224	황기성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322-3	신도농업 협동조합	경기도고양시덕구 삼송동 26-8	지상권/ 근저당권	
104	"	1122-18	도	89	89	국	농림축산식품부				
105	"	1122-52	도	35	35	황기성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322-3				
106	"	1117-10	도	251	251	공	경기도				
107	"	1122-20	도	40	40	국	기획재정부				
108	"	1122-44	전	136	136	황기성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322-3				
109	"	1122-22	도	30	30	국	농림축산식품부				
110	"	1122-23	대	330	137	이용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87 강촌마을 302-904				
111	"	1122-24	전	160	71	이용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87 강촌마을 302-904				
112	"	1122-25	대	63	34	국	기획재정부				
113	"	1122-49	전	222	152	이용섭	마두동 787 강촌마을 302-904				
114	"	1122-44	도	35	35	이용섭	마두동 787 강촌마을 302-904				
115	"	1122-51	전	71	71	이용섭	마두동 787 강촌마을 302-904				
116	"	1122-29	대	198	46	안동재 외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22-29				
117	"	1122-30	대	196	5	황명수 외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49 흰돌마을 304-203	우리은행	서울중구회현동1가 203 (잠실진주지점)	근저당권	
118	"	1122-27	도	134	70	국	농림축산식품부				
119	"	1120-51	도	60	41	공	고양시				
120	"	1120-52	대	168	46	김영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20-52	신한은행	서울중구태평로2가 120(일산강촌마을지점)	근저당권	
121	"	1120-57	도	3	3	천춘효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507				
122	"	1120-70	전	38	38	김영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20-52				
123	"	1120-56	도	15	15	국	국토교통부				
124	"	1120-55	전	85	71	김영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20-52	신한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지상권/ 근저당권	
125	"	1128-7	도	489	58	공	국토교통부				
126	"	1130-5	구	6,399	170	국	농림축산식품부				
127	"	1123-4	대	114	9	백석5리마 을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23-4				
128	"	1123-6	전	1,450	387	경규용	경기도파주시가온로245,1002동704호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지상권/ 근저당권	
129	"	1123-2	도	228	228	공	고양시				
130	"	1123-3	구	376	358	공	고양시				
131	"	1123-8	전	2,458	312	김효숙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35-6,3층	서울원예농 업협동조합	서울 중랑구 묵동 188-10, 11	근저당권	
132	"	1130-7	도	356	356	국	농림축산식품부				
133	"	1123	전	2,459	24	손동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83 샘터마을225-1502				
134	"	1130-17	대	569	60	채명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30-17				
135	"	1130-23	도	15	15	이은복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20-7				
136	"	1130-16	답	202	11	최광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30-17				
137	"	1130-15	도	590	13	이기홍 외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1206-1	한국외환은행	서울중구을지로2가 181 (주엽역지점)	근저당권	
138	"	1130-6	도	16	16	국	농림축산식품부				
139	"	1130-34	도	22	21	한영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30	일산농업 협동조합	일산서구 일산동 594-28(자유로지점)	근저당권	
140	"	1130-8	도	45	45	공	고양시				
141	"	1130	대	199	35	한영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507				
142	"	1129-4	도	2,083	15	국	농림축산식품부				
143	"	1129-3	대	297	30	이옥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29-3	지도농업 협동조합	경기도고양시덕구 토당동 330-3	근저당권	
144	"	1129-7	도	16	16	공	고양시				
145	"	1129-6	도	18	18	공	고양시	최운룡	경기도고양시일구 백석동 507	근저당권	
146	"	1129-2	잡	320	23	박점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29-2	동양물산기 업주식회사	서울시강남구논동 90 대용빌딩	근저당권	
147	"	1129-1	전	1,386	115	김성진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796-6 신공향프라자 -518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중구충정로1가7 5(의정부양주시지부)	지상권/ 근저당권	
148	"	1129-5	도	71	71	공	고양시				
149	"	1129	답	478	35	조성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49-8				
150	"	1129-8	도	41	41	김춘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507	강용오	경기도부천시오구 여월동 7-35	근저당권	

151	일산동구 백석동	1128-6	도	16	16	국	국토교통부				
152	“	1128-3	구	245	8	국	국토교통부				
153	“	1128-20	답	1,081	7	김영길	서울 용산구 새창로 144-6(원효로2가)				
154	“	1128-5	도	64	64	공	고양시				
155	“	1128-16	대	200	10	고재열 외1	덕양구 고양동 176-6,401	한국외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종로지점)	근저당권	
156	“	1128-4	도	23	23	최영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28	최영모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316-7	근저당권	
157	“	1128	대	198	3	고재열 외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28	한국외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종로지점)	근저당권	
158	“	923-11	도	227	3	국	농림축산식품부				
159	“	503-180	구	101	53	한국농어촌 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160	“	923-14	대	51	1	고재열 외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28	한국외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지상권/ 근저당권	
161	“	503-98	구	17	1	공	고양시				
162	“	503-96	구	38	1	공	고양시				
163	“	503-165	도	69	68	공	고양시				
164	“	923-9	도	94	88	국	농림축산식품부				
165	“	503-131	도	26	26	박춘희 외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327-1				
166	“	503-181	구	216	109	한국농어촌 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167	“	503-172	구	467	359	한국농어촌 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168	“	923-8	구	214	113	국	국토교통부				
169	“	503-171	도	1,510	6	공	고양시				
170	“	931	구	820	102	국	기획재정부				
171	“	503-18	구	4,633	63	한국농어촌 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172	“	1082-1	구	1,976	52	공	고양시				

● 지장물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실제 이용 사항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장항동	525-7	하우스	차광막	328㎡	하우스	정동희	서울양천구목동서로3511 04호(목동목동가든스튜디오)	국민 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지상권/ 근저당권
2	“	526-11	창고	함석/조립식	143㎡	창고	김승연	당양구행신로33-11,30동 102호(행신동행신3차에 스카이빌@)	하나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근저당권
3	“	526-11	웬스	H=1.2		웬스	김승연	당양구행신로33-11,30동 102호(행신동행신3차에 스카이빌@)	하나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근저당권
4	“	526-16	하우스	차광막	15㎡	하우스	유인걸	일산동구 장항동 875 호수마을 401-408			
5	“	527-9	창고	함석/조립식	106㎡	창고	김경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8-14	신한 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근저당권
			창고	함석/조립식	95㎡	창고					
6	“	522-13	사무실	콘테이너	36㎡	사무실	국	농림축산식품부			
			창고	콘테이너	19㎡	창고					
7	“	546-27	사무실	콘테이너	30㎡	사무실	이정은	일산동 580-18			
8	“	522-13	사무실	조립식	24㎡	사무실	국	농림축산식품부			
			창고	콘테이너	13㎡	창고					
9	“	527-9	창고	함석/조립식	210㎡	창고	김경호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장항동 68-14	신한 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근저당권
10	“	547-8	창고	콘테이너	9㎡	창고	강용택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47			
11	“	547-12	창고	천막	7㎡	창고	강용택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47			
12	“	528-12	창고	콘테이너	19㎡	창고	주상덕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장항동 296-37			
13	“	522-13	버스정류장	파이프	5㎡	버스정류장	국	농림축산식품부			
14	“	555-11	하우스	비닐	74㎡	하우스	김순덕	경기도 고양시일산동 655			
			하우스	비닐	157㎡	하우스					
			하우스	비닐	406㎡	하우스					
15	“	566-7	창고	콘테이너		창고	황한익	장항동 566-7			
16		560-15	하우스	비닐	291㎡	하우스	이종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20 문촌마을 1707-1501			
17	“	560-7	웬스	H=1.2		웬스	이종우	일산서구 주엽동 120 문촌마을 1707-1501			
18	“	565-8	하우스	파이프	166㎡	하우스	이완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66-34			
19	“	566-48	차마	천막	29㎡	차마	이완희	일산동구 장항동 488			
20	“	565-8	하우스	비닐	7㎡	하우스	이완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66-434			
21	“	566-49	창고	천막/파이프	10㎡	창고	이완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488			
22	“	571-7	상가2층	슬라브/적벽 돌	2㎡	상가2층	이막달	서울 강서구 등촌동 647-3			
			창고	천막	51㎡	창고					
23	“	571-11	창고	함석/조립식	193㎡	창고	김상국	일산동 1566-2 중산마을 906-104	하나 은행	서울 중구지 로1가101-1	근저당권
			창고	함석/조립식	114㎡	창고					
24	“	578	가설건축	파이프	14㎡	가설건축	신원식	경기도고양시일산 동구 장항동 438			
			사무실	콘테이너	9㎡	사무실					
25	“	577-5	하우스	비닐	3㎡	하우스	김현정	서울양천구목동91 2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510-607			
26	“	577-5	하우스	차광막	97㎡	하우스	김현정	서울양천구목동91 2 목동 신시가지 @ 510-607			
27	“	522-13	창고	콘테이너	5㎡	창고	국	농림축산식품부			
			창고	콘테이너	4㎡	창고					
28	“	522-13	카센타	천막/파이프	30㎡	카센타	국	농림축산식품부			
29	“	590-5	하우스	차광막	49㎡	하우스	이미영	경기도고양시일산 동구 장항동 618-44	국민 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30	“	590-4	하우스	비닐	146㎡	하우스	이기성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438			
			배나무	H=2.5		배나무					

30	백석동	590-4	헛개나무	H=9.0		헛개나무					
			대추나무	H=2.5		대추나무					
			매실나무	H=3.0		매실나무					
31	“	600-3	하우스	비닐	94㎡	하우스	오명호	지도읍 행신리57			
			창고	콘테이너	16㎡	창고					
32	“	522-13	웬스	H=1.2		웬스	국	농림축산식품부			
33	“	522-13	창고	콘테이너	13㎡	창고	국	농림축산식품부			
			창고	조립식	2㎡	창고					
34	“	605-5	창고	콘테이너	13㎡	창고					
35	“	522-13	웬스	H=1.2		웬스	국	농림축산식품부			
36	“	522-13	웬스	H=1.2		웬스	국	농림축산식품부			
37	“	625-4	하우스	비닐	211㎡	하우스	손용국	경기도고양시일산구 장항동 438			
			하우스	비닐	380㎡	하우스					
			하우스	비닐	215㎡	하우스					
38	백석동	1087-7	하우스	비닐	265㎡	하우스	김형남 외1	지도면 행주외리185-9			
39	장항동	551-2	웬스	H=1.8		웬스	국	농림축산식품부			
40	백석동	1087-10	웬스	H=1.2		웬스	국	농림축산식품부			
			비석			비석					
			주목나무	H=2.5		주목나무					
			회양목	H=1.3		회양목					
41	백석동	1087-7	하우스	차광막	132㎡	하우스	김형남 외1	지도면 행주외리185-9			
			하우스	차광막	88㎡	하우스					
42	“	1087-5	공장	합석/조립식	68㎡	공장	국	농림축산식품부			
			공장	합석/조립식	73㎡	공장					
			공장	합석/조립식	88㎡	공장					
			창고	콘테이너	17㎡	창고					
43	“	1087-10	웬스	H=1.2		웬스	국	농림축산식품부			
44	“	1087-10	웬스	H=1.2		웬스	국	농림축산식품부			
45	“	1089-7	창고	콘테이너	23㎡	창고	전혜자	장항동 624-23			
			창고	목재	6㎡	창고					
46	“	1087-10	웬스	H=1.2		웬스	국	농림축산식품부			
47	“	1087-10	창고	목재	17㎡	창고	국	농림축산식품부			
48	“	1087-10	웬스	H=1.2		웬스	국	농림축산식품부			
49	“	1091-7	카센타2층	합석/조립식	109㎡	카센타2층	김명규 외1	서울관악구봉천동 1000관악현대@ 109-901			
			웬스	H=1.2		웬스					
50	“	1093-3	가옥	슬라브/적벽 돌	20㎡	가옥	장운용	1317현대밀라트1 씨-1010			
			공장	슬라브/적벽 돌	6㎡	공장					
			작업장	천막/파이프	83㎡	작업장					

50	백석동	1093-3	사무실	콘테이너	132㎡	사무실					
			담장	합석H=7.0	88㎡	담장					
53	장항동	624-7	버스정류장	슬라브/적벽돌	68㎡	버스정류장	공	고양시			
54	백석동	907-304	카센타,가옥 3층	합석/조립식	73㎡	카센타,가옥 3층	이균	경기도고양시일산구 장항로130(백석동)	(주)윙창 상호저 축은행	경기광명시 철산동 250	근저당권
55	“	907-307	상가,가옥2 층	슬라브/철콘	88㎡	상가,가옥2 층	김정자	경기도고양시일산구 백석동 907-307	농업협 동조합 중앙회	서울중구충 정로가75(일 산지점)	근저당권
56	“	907-11	상가	슬라브/틸톤	17㎡	상가	정순자	경기도고양시일산구 백석동 907-11			
57	“	907-54	하우스	차광막		하우스	정순자	경기도고양시일산동 구 백석동 907-11			
58	장항동	510-6	상가	합석/조립식		상가	이광훈	경기도고양시일산구 장항로 130(백석동)			
			창고	콘테이너	23㎡	창고					
			창고	콘테이너	6㎡	창고					
			하우스	비닐		하우스					
59	백석동	1104-6	카센타	합석/조립식	17㎡	카센타	정순자	경기도고양시일산구 백석동 907-11			
60	“	1104-10	세차장	조립식		세차장	이영휘 외1	경기도고양시일산구 장항동 618-60	SK네트 웍스(주)	경기수원시 장안구영화 동 104-28	근저당권
61	“	1104-35	웬스	목재H=1.2	109㎡	웬스	김경배 외1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589-17			
62	“	1105	하우스	차광막		하우스	오성현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행신동 905 햇빛마을 2102-1501	중소기 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지상권/ 근저당권
63	“	1112	하우스	차광막	20㎡	하우스	김정곤	경기도고양시일산구 백석동 507			
64	“	1117-36	창고	콘테이너	6㎡	창고	공	경기도			
65	“	1121	가옥	슬라브/적벽돌	83㎡	가옥	허경희	경기도고양시일산구 백석동 1121	우리 은행	서울중구회 현동가130(북 가좌동지점)	근저당권
			화장실	슬라브	41㎡	화장실					
			하우스	차광막	33㎡	하우스					
66	“	1121-14	창고	콘테이너	27㎡	창고	허영희	경기도고양시일산구 백석동 1121	우리 은행	서울중구회 현동가130(북 가좌지점)	근저당권
			창고	천막	5㎡	창고					
67	“	1122-15	사무실	콘테이너	30㎡	사무실	오동보	서울마포구현석동222 강변현대홈타운@ 106-702	중소기 업은행	서울중구을 지로2가150(화 정역지점)	
			계근대		18㎡	계근대					
			담장	H=6.0		담장					
68	“	1117-15	웬스	H=1.2		웬스	공	고양시			
69	“	1122-23	가옥	슬라브/적벽돌	78㎡	가옥	이용섭	고양시일산구 마두동 787 강촌마을302-904			
			하우스	차광막	15㎡	하우스					
70	“	1122-29	가옥	성글/적벽돌	10㎡	가옥	안동재 외3	고양시일산구 백석동 1122-29			
71	“	1122-30	가옥	성글/적벽돌	4㎡	가옥	황명수 외1	고양시일산구 백석동 1349현동마을304-203	우리 은행	서울중구회 현동가 203(잠실진 주지점)	근저당권
			주목나무	H=3.0		주목나무					
			향나무	H=3.0		향나무					
72	“	1120-52	상가	슬라브/벽돌	40㎡	상가	김영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20-52	신한 은행	서울중구태 평로가120(일 산강촌마을지 점)	근저당권
73	“	1120-52	사무실	합석/조립식	1㎡	사무실	김영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20-52	신한 은행	서울중구태 평로가 120(일산강 촌마을지점)	근저당권
74	“	1120-62	창고	조립식	30㎡	창고	남상정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20-62	농협 은행	서울 중구 충정로1가 동일로 120 (공향지점)	근저당권
			대문	철재		대문					
			담장	적벽돌H=1.3		담장					
			소나무	H=9.0		소나무					